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목 차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2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3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6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16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21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현황	25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계약의 이해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28
2.2 계약의 종류	31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33
2.4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74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92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95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103

제4장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4.1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108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11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13
4.4 직접생산확인제도	114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116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18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120
4.8 공공구매론	122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124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28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30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31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 제도	136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145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	150
5.4 단체표준제도	151

붙임

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156
2.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158
3.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160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현황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임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임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8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함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의 종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국가중앙 조달기관인 조달청의 2020년 8월 기준 공공조달 대상 수요기관은 총 59,983개이며 광역시·도 지방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등이 포함된 교육기관이 약 20%,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속하는 기타 수요기관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나라장터 수요기관 유형별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지자체	교육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지방 공기업	기타	소계	
2020년 8월	기관수	59,983	5,169	6,912	11,957	18,869	1,005	1,438	449	242	32,811	35,945
	(%)	100.0	8.6	11.5	19.9	31.5	1.7	2.4	0.7	0.4	54.7	59.9

* 자료: 조달통계(조달청, 2020.08)

- 상지구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 및 계약 실무에서 수요 기관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19-25호, 2019. 12. 30., 전부개정)에서는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동법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기관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산하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

*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동법 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기타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
의료원(법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6.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
7.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8.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
보조사업자
15.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6.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1.3.1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함(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매목표 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관(837개, 2019년 말 기준) : 국가기관(46), 광역·기초자치단체(243), 교육청(17), 공기업·준정부 기관(129), 기타공공기관(210), 지방공기업(151), 특별법인(6), 지방의료원(6)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법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요구(시행령 제12조)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적용대상**
 -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유형(19종)	설 명
성능인증제품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신제품인증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신기술인증 (NE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유형(19종)	설 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 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구매조건부 R&D성공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 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인증된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융복합기술 개발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산업융합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공공기관 개발선택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택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택품’으로 지정된 제품
상생협력기술 개발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 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적합성인증 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우수산업 디자인상품(GD)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물산업 우수 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 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혁신시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선정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1.3.3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 법률 개정(여성기업법 제 9조)을 통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14.1.1 시행)
- 정부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공공시장 내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한 구매 의무와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
-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 이하로 설정 운영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1.3.4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정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장애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1%로 상향 의무 적용함
 - *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별도협의 가능
 - * 장애인기업제품은 1%(물품, 용역, 공사 통합),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물품, 용역), 표준사업장은 0.3%(물품, 용역)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 물품, 용역, 공사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중소기업자만 해당)
 -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5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20.11월 기준 2,704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한도 상향
 - 사회적기업이 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3.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

-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 훈련시설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3.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 마을

• 복지공장

- 자활용사촌 회원이 공동투자하여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 생산품목 :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복지공장 품목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 자료공간 – 현황·통계 – 기타(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현황)
- 자활용사촌 구매액 : 복지공장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
- 자활용사촌 생산가능품목 총 구매액 : 자활용사촌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이지만 타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과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8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 **관련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녹색제품구매법)」 및 동법 시행령

• 녹색제품의 범위(법 제2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 또는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부여(법 제3조, 제6조, 제8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⑤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녹색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1.4.1 우선구매제도 활용의의

-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우선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국가적 선양과 예우가 필요한 보훈단체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및 제조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과 이를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 및 단체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재정을 배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업체 및 단체들은 일반적인 조달업체 및 단체들과 달리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관련 우선구매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품들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 비해 공급 기회, 대가보장 측면에서 일반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자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머물러 있는 전략을 채택하면 곤란함
 - 우선구매제도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 및 제품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기회의 선점, 보다 좋은 조건의 공급계약 등을 통해 축적된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수단 및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1.4.2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별 공공조달 활용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관련 공공구매 현황 중 사회적기업의 조달업체 등록 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경우 378개(2010년) → 502개(2011년) → 618개(2012년) → 667개(2013년) → 927개(2014년) → 1,190개(2015년) → 1,429개(2016년) → 1,674개(2017년) → 1,975개(2018년) → 2,366개(2019년) → 2,704(2020년 11월 유효한 인증 사회적기업 기준)개로 우선구매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15% 수준에서 지속적 증가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12월말 인증된 사회적기업 2,366개가 8,627억원(2018년: 7,008억원)의 공급실적을 기록함(나라장터 집계 실적 기준)
 - 2019년 전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 12,830억원의 약 67.2%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집행 및 관리되고 있음
 - * 나라장터를 통해 집계되는 실적과 고용노동부 발표 실적집계의 차이는 계약에 의한 방법을 통해 집행되는 실적만이 나라장터에서 집계가 되기 때문임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가회의 확보관점에서 중앙조달 기관인 조달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자체조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수요가 약 93% 이상이므로 개별 수요기관의 물품공급 정보 확보와 차별화된 공급전략 마련 필요
-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지명경쟁 가능 구매부문, 특화된 기술 및 품질보유 우선구매제도 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냄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및 공급 가능한 품목을 고려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 내에서 평균적인 공급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상품과 용역의 개발 및 수요를 견인하지 못할 경우 현재 주어진 공공구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공공구매제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조달대상별 공급실적 현황 비교]

기업구분 (2019년말 기준)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개)	조달대상별 공급실적금액					
		물품 실적금액	공사 실적금액	일반용역 실적금액	기술용역 실적금액	합계 실적금액	평균공급 실적금액
여성기업	23,828	39,964	38,366	17,286	3,734	99,350	4.2
장애인 기업	2,958	11,608	4,335	1,951	363	18,257	6.2
사회적 기업	1,564	5,908	376	2,314	30	8,627	5.5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10)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상품과 용역의 개발 및 수요를 견인하지 못할 경우 현재 주어진 공공구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공공구매제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우선구매제도가 성장의 내실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은 타 우선구매제도 대비 실적건수와 공급금액 관점에서 양적/질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공급건수와 금액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수주기회를 확보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필요함
- 2015년 기준 여성기업의 경우 나라장터 기준 여성기업은 공급건수 증가율이 건당 평균공급 실적 금액은 약 53%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약 7% 수준으로 급격한 계약건수의 증가에도 개별 공급 건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규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사회적경제영역 우선구매제도 성장 변동 현황]

연도	2015 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건당 평균 (백만원)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백만원)	총실적 성장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백만원)	총실적 성장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백만원)	총실적 성장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백만원)	총실적 성장율 (%)
여성 기업	30.9	24.7	29.1	17.5	98.0	18.2	23.6	14.6	15.7	-0.9	28.5	14.4	17.7
장애인 기업	22.8	18.2	22.3	15.7	80.0	15.0	21.1	6.9	14.7	4.5	14.6	15.9	24.6
사회적 기업	10.5	17.9	13.4	51.0	101.8	8.9	33.4	9.4	9.4	16.4	19.1	9.7	23.1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09)

[연도별 사회적경제영역 건당 공급실적 감소현황]

2015 → 2019	건당 감소금액	감소비율
여성기업	- 16,527,498	-53.43%
장애인기업	- 6,829,637	-30.00%
사회적기업	- 708,479	-6.78%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09)

- 상기와 같이 건당 평균 공급실적 금액의 감소는 총 공급실적이 확대되더라도 지원대상 기업이 많아지고 계약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단위 공급기회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수주할 수 있는 공급실적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전에 추가가치가 유사한 타 우선 구매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및 단체들이 먼저 진입하여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달성한 · 질적 균형을 유지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우선 구매제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및 확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공공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들이 동일한 물품과 용역을 구매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약 또는 구매담당자에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4.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현황

- 2019년 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총 1,564개로 유효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2,366개(2019년 말 기준) 대비 약 66.1%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도가 70%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울산, 전남, 경남 등이 50%대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음
-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단순 평균 공급실적(조달청 중앙조달실적 기준)은 약 5.52억원(사회적기업제품 합계공급실적/사회적기업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이며 평균 이상 공급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9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됨
- 인증기업 소재지별 수요 및 공급 특성(수요기관, 대상품명 등)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구분 (2019년말 기준)	등록 업체기준 현황(개)				공급실적금액 기준 현황(억원)				
	인증 업체수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	등록 비율	업체당 평균 공급 금액	합계 공급 실적 금액	물품 실적 금액	공사 실적 금액	일반 용역 실적 금액	기술 용역 실적 금액
전체	2,366	1,564	66.10%	5.52	8,627	5,908	376	2,314	30
서울특별시	450	327	72.67%	7.13	2,330	1,621	134	565	10
부산광역시	113	76	67.26%	4.14	315	192	5	117	0
대구광역시	81	56	69.14%	6.55	367	248	7	111	0
인천광역시	145	102	70.34%	3.23	330	214	8	108	0
광주광역시	108	81	75.00%	2.39	194	154	7	31	1
대전광역시	65	46	70.77%	9.79	450	360	5	83	2
울산광역시	84	47	55.95%	5.63	264	178	2	83	2
세종특별 자치시	12	9	75.00%	16.50	149	90	3	56	-
경기도	405	251	61.98%	5.57	1,399	878	86	432	4
강원도	129	78	60.47%	4.46	348	233	13	102	0
충청북도	101	68	67.33%	4.58	312	176	13	118	5
충청남도	97	62	63.92%	5.26	326	203	4	119	1
전라북도	140	88	62.86%	4.12	363	172	9	181	0

구분 (2019년말 기준)	등록 업체기준 현황(개)				공급실적금액 기준 현황(억원)				
	인증 업체수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	등록 비율	업체당 평균 공급 금액	합계 공급 실적 금액	물품 실적 금액	공사 실적 금액	일반 용역 실적 금액	기술 용역 실적 금액
전라남도	124	74	59.68%	6.36	471	371	19	80	1
경상북도	146	67	45.89%	7.90	529	414	45	67	3
경상남도	113	61	53.98%	5.98	365	307	8	50	0
제주특별 자치도	53	38	71.70%	3.08	117	97	9	11	0

*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중 '미분류' 33개 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함.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10)

- 현재 상대적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고 공급실적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향후 점진적으로 구매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구매계획, 기 공급 물품과 용역의 종류, 공급기업 등을 분석하여 자사에 차별화된 경쟁 요소 마련 필요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2012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적 및 계획 보고 법제화 이후 연평균 46% 수준의 공급확대를 이루었음
- 이러한 실적 확대는 2012년 이후 매년 신규 등록되는 사회적기업 증가와도 동일한 추세로 실질적인 참여확대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구매목표비율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로 2019년 말 총 구매액 대비 2.50% 수준으로 2018년 2.27% 대비 약 0.23%p 증가(약2.1% 성장,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30% 이상 대폭 증가 지속)하였고 일반적 권고치 3%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비중 변화]

구분	총 구매액 [백만원,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백만원, B]	비율[% , B/A]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실적	35,991,782	191,633	0.5	—
2013년 실적	38,858,926	263,186	0.68	37.34%
2014년 실적	37,225,488	355,026	0.95	34.90%
2015년 실적	38,496,886	595,727	1.55	67.80%
2016년 실적	41,117,067	740,139	1.80	24.24%
2017년 실적	46,309,231	942,800	2.04	27.38%
2018년 실적	46,755,468	1,059,549	2.27	12.38%
2019년 실적	51,255,571	1,282,950	2.50	21.08%

* 자료: 연도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12~2020.04)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가 법제화 된 2012년 전후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 이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구매목표비율이 1.55%를 초과한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나라장터 등록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유효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70%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나라장터 등록기업수(A)	519	667	1,251	1,390	1,564
등록기업 증가	—	148	584	139	174
인증기업수(B)	1,190	1,429	1,674	1,975	2,366
인증기업 증가	—	239	245	301	391
등록비율(A/B)	43.61%	46.68%	74.73%	70.38%	66.10%

* 인증 사회적기업수는 각 년도말 유효한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10)

- 2017년 현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경제성장’ 관점에서 추진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확장적 시행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사회적가치 평가를 강화한 결과 나라장터 실적기준 2015년 대비 2019년 계약건수가 약 6만여건 증가하여 약 2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회적경제영역 우선구매 실적 변화]

2015년 대비 2019년 변화	계약건수 증가 수(건)	공급건수 증가 비율	공급실적 증가 금액(억원)	공급실적 증가 비율
여성기업	500,046	263.60%	40,674	69.32%
장애인기업	70,595	160.50%	8,244	82.34%
사회적기업	59,969	209.73%	5,639	188.73%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0.09)

- 특히 동기간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실적 금액 증가 역시 약 0.56조원, 약 189% 성장하였고 이는 유사 우선구매 분야로 간주되는 여성기업과 및 장애인기업과 비교 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된 의무 구매제도인 점을 고려하며 구매목표비율이 임의 설정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포함하여 주요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녹색제품(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가 법률상 구매목표비율을 초과달성하였음
- 사회적기업제품의 경우는 법률상 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 분야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등과 비교할 경우 구매목표비율에 있어 2배 이상 큰 폭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

우선구매대상*	근거법령	강행성 여부	구매목표비율	실적금액 (억원, '19년)	비율 (%)	소관부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 대비 50% (전년대비 1.6%p 증가)	1,049,913	77.8	중소벤처 기업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07%p 증가)	6,488	1.14	보건복지부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	구매가능 총구매액대비 100% (전년대비 4.1%p 증가)	38,797	54.4	환경부
기술개발제품 (NEP·NET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15% (전년대비 0.8%p 증가)	53,470	14.5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2%p 증가)	20,953	1.6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대비 물품5%/공사3% (전년대비 0.2%p 증가)	119,273	8.8	중소벤처 기업부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의	총구매액 대비 3%수준 권고 (전년대비 0.23%p 증가)	12,830	2.50	고용노동부

자료원: 각 부처별 우선구매실적 보도자료 분석, 한국조달연구원, 2020.09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현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인 구매행정으로 2019년도 구매액은 최초로 100조원대로 진입한 105조원을 달성하였으며, 구매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또한 77.8%로 '06년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전체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조달대상별 중소기업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개)

구 분	'17년	'18년	'19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92.2(74.8%)	94.0(76.2%)	105.0(77.8%)
총 구매액	123.4	123.4	135.0
대상기관	788	836	837

* 자료: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20년 구매목표(안)"(중소벤처기업부, 2020.04)

- 2019년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818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9.9% 수준으로, 대부분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고 있음

* 법정비율 달성기관 비중 : ('17) 98.0% → ('18) 99.9% → ('19) 99.9%

- 2019년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5조 4천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4.5%)으로 2018년 대비 약 20.0%(0.9조원)가 증가하고 법정구매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를 초과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1조 9천억원(총구매액의 8.8%)으로 2018년 대비 12.3%(1.3조원)가 증가하고 물품(9.4%) · 용역(8.9%) · 공사(8.4%) 분야별 구매율 역시 법정구매율 (물품 5%, 용역 5%, 공사 3%)을 초과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1천억원(총구매액의 1.6%)으로 2018년 대비 16.7%(0.3조원) 증가하고, 법정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1%를 초과

[중소기업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정책지원 분야별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8년 실적			'19년 실적			구매액 증가율 (%) (’18년→’19년)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33.1)	4.5	13.7	(36.9)	5.4	14.5	18.1
여성기업제품	123.4	10.6	8.6	135.0	11.9	8.8	12.5
장애인기업제품	123.4	1.8	1.4	135.0	2.1	1.6	18.6

* 자료: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20년 구매목표”(중소벤처기업부, 2020.04)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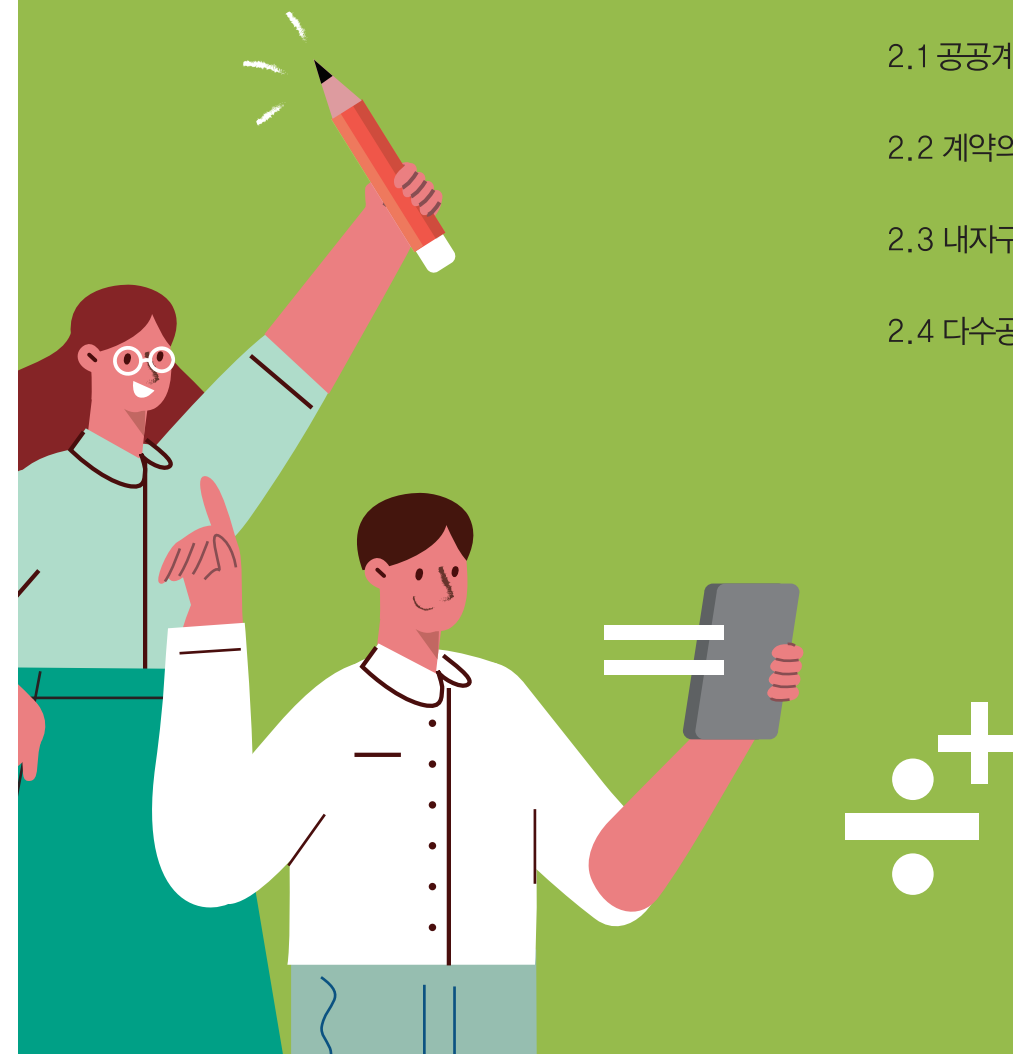
계약의 이해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2.2 계약의 종류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2.4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계약의 이해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2.1.1 계약의 의의

계약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①계약 자유의 원칙, ②신의 성실의 원칙, ③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임

계약의 특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계약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공공계약 관련 법령체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① 법 35조문 ② 시행령 10장 118조문 ③ 시행규칙 8장 87조문
④ 행정규칙 144건(예규, 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① 법 43조문 ② 시행령 10장 140조문 ③ 시행규칙 8장 87조문
④ 행정규칙 30건(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 524건

공공계약 적용대상 기관

-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구매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정부 및 지자체 모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관계 법령상으로는 국가 및 중앙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의 적용을 받음
- 이는 공공구매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 및 낙찰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또는 향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관이 어떤 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국가기관이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법인

2) 준용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 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2)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2.2 계약의 종류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대상 : 물품 · 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리스 등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낙찰자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대가를 일시에 선납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후 지급,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경우 2인이상 감정평가	• 작성 • 2억(전문1억원, 전기공사8천만원)미만 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 · 물품 수의 계약 시 생략가능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물품제조 · 구매계약 • 용역계약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공사계약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등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금액에의한구분 - 내용에의한구분	• 공사 - 최저가입찰 - 적격심사입찰 - 턴키,대안입찰 - 기술제안,공모 - 협상에의한계약 - 최적가치 낙찰 • 용역,물품 - 협상에의한계약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희망수량경쟁입찰 - 설계공모 ※ 중소기업자간경쟁 입찰

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집계는 물품 및 용역계약 구매실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㉔ 공공조달 대상 중 물품과 용역을 통합하여 내자라고 하고 이를 구매하는 방법을 내자구매라고 함

㉔ 사회적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진출은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약체계와 세부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3.1 내자구매 개요

㉔ 정의: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함

㉔ 조달대상으로서 물품의 분류는 제조와 공급물품으로 구분됨

- 제조물품은 직접생산확인요건을 갖춘 조달업체가 설계도, 규격서 등에 따라 제작 및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임
- 공급물품은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은 시중 일반 거래물품으로 별도의 제작 요구 없이 사전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품임

㉔ 조달대상으로서 용역의 분류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1조의2 · 3,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용역의 종류

구분	종류
일반용역	• 정보화사업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조경관리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기술용역의 종류

○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기타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 일반용역의 종류 :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용역은 SW사업 또는 정보기술용역이라는 별칭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정보화사업용역

▶ 개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됨

▶ 업무영역

ICT사업건설팅

- 조직,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또는 평가 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 추진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 ※ ISP, PMO, 정보시스템감리 등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
-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용역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단말기 등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기, 선로 및 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는 전송매체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
-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의 용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을 전문 IT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용역

DB구축 및 자료입력

- 기록물, 도면, 문서 및 공간정보에 대하여 측량, 탐사, 촬영, 스캔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용역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용역

폐기물처리용역

▶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함

▶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랑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개요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함

종류

시설물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 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경비

-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함

청소·위생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육상운송용역

▶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함

▶ 종류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 차량 입찰
- 택배 용역

학술용역

▶ 개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 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 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됨

▶ 종류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 · 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 · 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함

▶ 종류

- 정밀 · 계측 · 관측장비 유지 · 보수
- 통신장비 유지 · 보수
- 기타 각종 장비 유지 · 보수 등

광고용역

개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종류

인쇄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방송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공중광고용역

–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인터넷·통신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

디자인용역

개요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됨

2.3.2 내자구매 조달요청 범위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구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국가기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및 임차, 대여 포함 -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1억원 미만의 물품 - 긴급구매물자(천재/지변 등) - 국방목적 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 조달청장이 구매위임한 경우 등 - 음식료품류, 동·식물품류, 농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차량용 유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포함)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단기계약 이외의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수요기관(공공기관)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기회와 관련된 구매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모든 수요기관은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포함하여 단가계약 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야 함
 - * 특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경우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므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이외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므로 구매계획, 입찰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수요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찰공고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본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정보가 게시되나 구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자체 조달을 통해 물품과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는 경우 급급적 종합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기관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억원) 이상 경우에만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록된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일반적임

2.3.3 내자구매 계약방법

📌 계약방법 분류

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가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사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구매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승락

📌 일반경쟁계약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 제한경쟁계약

-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써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대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 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한기준

-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

📌 지명경쟁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 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 구매의 장점이 있음.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근거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입찰 시 경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 경쟁의 방법이 일반적임
-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소기업우선조달제도 등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되는 것임
- 사회적기업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및 용역 입찰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만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됨

⑤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생산 소지자가 1인인 물품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소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입찰에서 경쟁의 방법 이외에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쟁적 방법인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공조달 일반 또는 우선구매제도에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은 없음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아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2015년부터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나라장터시스템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 상한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음
-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한도 상향(사회적기업이 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해당사항
당해연도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서 총이행 금액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단독계약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기타 계약이행 기간에 따라 당해년도, 장기계속, 계속비계약 등으로 구분되고 계약금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으로 구분됨
- 사회적기업들이 유의미하게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계약방식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과 같이 계약이행의 주체가 단수인지 또는 복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방법임
- 일반적으로 계약자 1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단독계약이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의 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동계약임
- * 일반적으로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문에서 계약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을 때 활용 가능
- 사회적기업의 경우 생산역량 등이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특정 사회적기업의 생산 또는 공급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계약조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입찰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 동일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확정계약(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됨.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품목

㉣ 공급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 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전자복사기, fax 등)
다수 공급자 계약	•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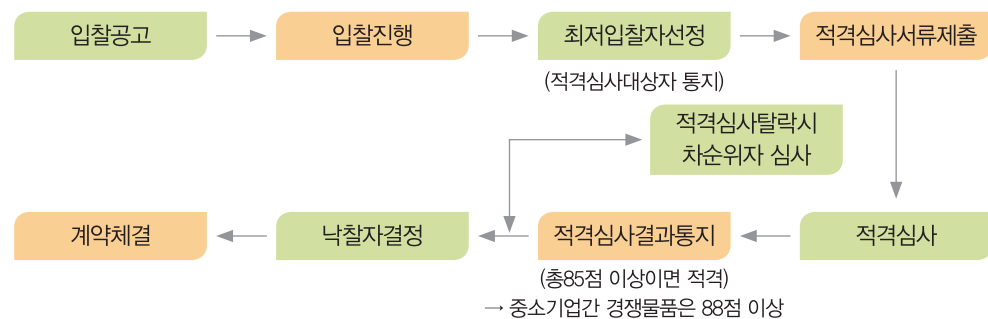
- 공급방법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들이 공통적, 반복적, 상시적인 수요가 있는 물품 중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아 시중에서 품질 및 가격 등이 검증된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사전에 공급조건 및 단가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계약을 체결함
-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과 유사하나 실제 계약의 효력으로 납품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점이 아닌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업체의 물품과 용역을 실제 수요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납품을 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특징점이 있음

2.3.4 내자구매 낙찰자 결정제도

㉠ 적격심사제도(물품 및 용역)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계약절차



적격심사낙찰제는 1.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2.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3.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가격 외에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하한율은 해당 적격심사에서 투찰 가능한 가장 낮은 금액비율(추정가격 대비 87.745% 등으로 적격심사기준별 상이함)로 낙찰하한율 이하로 투찰하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하게 되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님

*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별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가 상이하므로 입찰 공고문의 명시된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세부절차

2018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입찰에서 최저가 낙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입찰에서 주로 적용될 낙찰방법으로 세부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적격심사 세부절차]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명시 * 공사는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심사기준 등 열람	-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 등 서류 비치, 요구시 교부 - 열람 ·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 진행	기초금액은 개찰 5일 전까지 공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개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필요서류 제출 요구 - 심사서류 제출기한 (국가계약)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조달청^제)은 시설공사 · 기술용역은 7일 이내, 일반용역은 5일 이내, 물품제조 · 구매는 3일 이내로 규정 (지방계약) 시설공사 · 기술용역은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 4일 이내), 물품제조 · 구매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재난복구사업 3일),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보완요구(1회)	(국가계약) 서류 미첨부 또는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가능(조달청^제)은 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 보오나요구 가능, 물품제조 · 구매 및 용역은 기한 미설정) (지방계약)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 · 사업은 3일) 보완요구 가능
적격심사 실시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3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의 재난복구공사 · 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 2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낙찰자 결정통보	-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국가지방계약별, 공사 · 물품 · 용역별 적격통과점수는 [표 64] 및 [표 65] 참조 －[표 61]과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재심사 요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지방계약만 규정)는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일(지방계약만 규정)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국가계약은 3일, 지방계약은 5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대상인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서 물품 및 용역분야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즉 가격만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반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가 물품 및 용역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 적격심사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금액의 규모에 따라 3단계 내외로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각 단계별로 설정된 최저 입찰 가능금액 수준인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입찰자로서 각 단계별로 설정된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낙찰방법이만큼 사전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방법 등을 확인하여 낙찰 가능성 여부 및 부족한 적격심사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신인도 가점 항목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㉞ 종합낙찰제(물품)(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업체별 가격 · 성능 · 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⑤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개요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 결정
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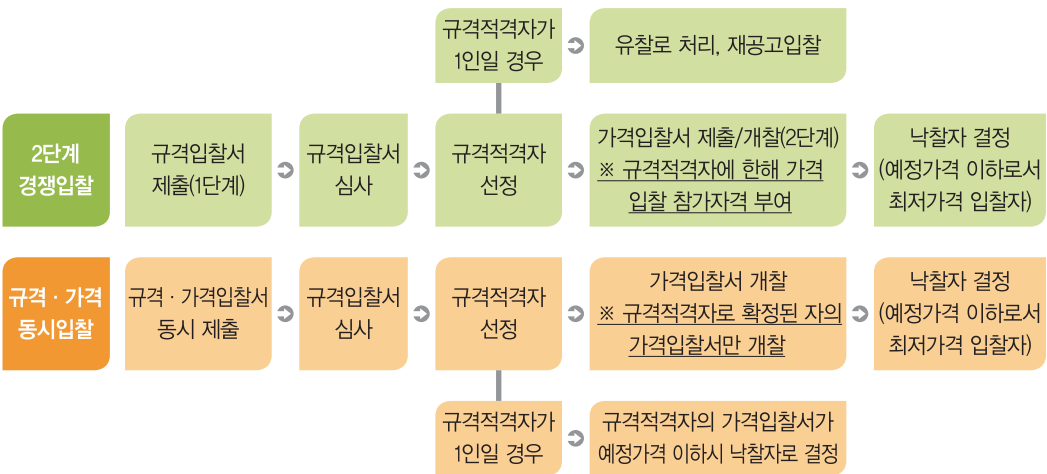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용역과 같이 계약이행과 관련한 규격, 기술 역량과 자격 검증이 필요한 경우 1단계에서 규격, 기술 등의 적격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제도임

• 계약절차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유사해보이나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접수하여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반면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최초 1, 2단계를 통합하여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접수하여 규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유찰되나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단계에서 입찰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자에 대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 일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품과 용역의 이행을 위한 기술력, 복잡성, 전문성,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격자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기술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낙찰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전 기술역량 수준과 공급 가능 가격 수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최종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방식이므로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 낙찰 등의 문제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청소용역 등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⑤ 희망수량경쟁입찰(물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⑥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용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개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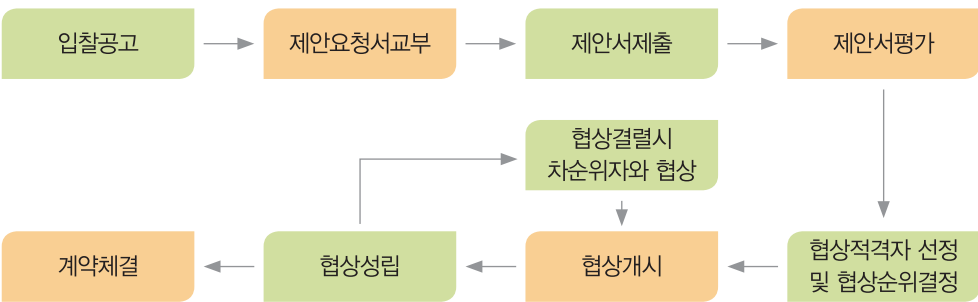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 계약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규격 · 가격 동시입찰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 학술용역, 정보화용역 등 기술/지식이 중요한 대부분의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 대비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창의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수행역량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확보가 중요함

* 입찰공고단계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입찰 정보를 확인하여 사전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는 1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0일,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추정가격 규모별 10일 ~40일의 기간을 부여함

국가계약		지방계약	
기준	공고기간	기준	공고기간
-	40일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1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제출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국가계약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지방계약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85% 이상인 자)

*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은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령 적용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협상순서는 제안서를 평가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통과점수 이상 합산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름

국가계약

-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지방계약

-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추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주로 용역분야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양적 평가지표 중심의 적격심사의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능력 심사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일반적으로 학술성, 기술성, 전문성, 복잡성 등이 높은 용역분야에서 기술능력 등 종합적 이행능력이 뛰어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임
- 적격심사와 달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에게 심사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수요기관이 사전 공지한 기준점수 이상 통과자 중 최고점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 *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역량이 뛰어난 경우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가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낙찰제도로 볼 수 있음

⑤ 리스계약 제도(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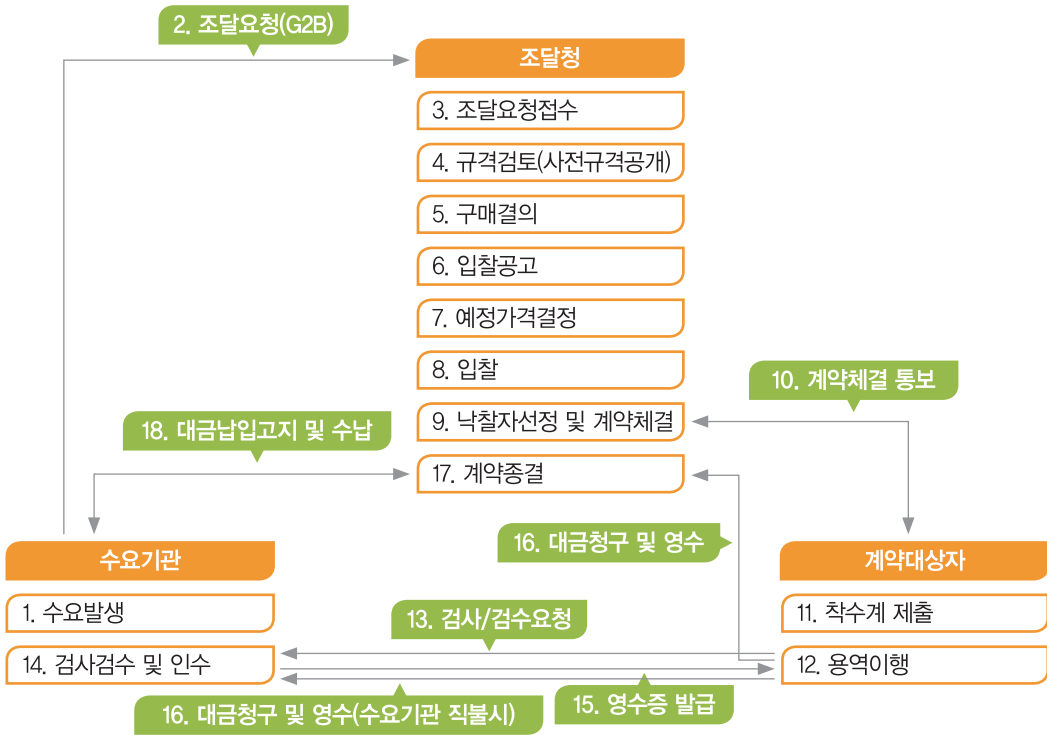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⑤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국가계약법 제4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

2.3.5 내자구매 업무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조달은 해당 연도의 필요 시점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년도말 대략적인 조달계획을 수립함
-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 및 구매 계획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거나 수요기관의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급을 목표로하는 지역의 수요기관의 구매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입찰 등 공공조달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매해 연초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요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물품 및 용역 공급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나라장터 발주계획 검색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공공기관별 연간발주계획을 매년초 등록하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을 희망하는 품명(물품, 용역 및 공사), 발주시기, 발주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입찰준비 가능함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메뉴 클릭 시 물품, 용역, 시설공사분야 메뉴를 클릭하면 각각의 연간단위 ‘발주계획 확인이 가능함’
- 검색한 발주계획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분석 가능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

입찰정보

수요기관

조달업체

로그인

입찰정보

- ▶ 품목
- ▶ 견적요청현황
- ▶ 조달청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 ▶ **발주계획현황**
- ▶ 사전가격공개
- ▶ 공고현황
- ▶ 개찰결과
- ▶ 최종낙찰자
- ▶ 계약현황

- 공사 ▶
- 용역 ▶
- 리스 ▶
- 외자 ▶
- 비촉 ▶
- 기타 ▶
- 민간 ▶
- 견적요청 ▶
- 계약진행현황 ▶
- 연기공고 ▶

물품 발주계획 목록

온라인 매뉴얼

1. 조달방식 : 조달청 계약의뢰 건인 경우 **중앙조달**을, 기관 자체 집행 건인 경우 **자체조달**을 선택 후 검색하세요.

2. 연계기관의 발주계획 건은 사항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발주명을 도출 경우, 생각나는 단어만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게시일자는 발주계획 건의 등록일자를 뜻하며, 게시일자와 발주시기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발주계획 공고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항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구분	물품 ▼ 전체 ▼	발주시기	2020 ▼년 10 ▼월 ~ 2020 ▼년 12 ▼월
조달방식	전체 ▼	게시일자	2020/08/16 ~ 2020/10/15
발주기관		기관소재지	전체 ▼
세부품명번호	① 최소 4자리 이상 입력해 주세요. ② 세부품명번호 부분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56101507, 561015, 5610 등 ③ 오픈북 찾기 버튼을 통해 세부품명번호를 직접 검색 가능합니다.		
사업명			

검색

1 ~ 1000 ▼

EXCEL다운로드

[🔍] 검색건수 : 4,337건
10 ▼
등록고침

No.	업무 유형	발주기관 발주시기	조달방식	계약방법	사업명	세부품명(물품분류명)	
						물품수량	물품예산금액
4331	물품	경기도수원교육청 천천중학교 2020/12	자체 조달	제한경쟁	2021학년도 천천중학교 신입생 교복(동·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5310270504] 여자학생복(동)	
						340 벌	₩102,000,000
4332	물품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수성중학교 2020/10	자체 조달	수의계약	2020학년도 10월 학교급식용 농수산식품 소액수의 전자건과 제를 공고	[5017200101] 간장	
						1 식	₩10,736,280
4333	물품	경기도수원교육청 영통중학교 2020/12	자체 조달	제한경쟁	2021학년도 영통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 구매	[5310270503] 남자학생복(동)	
						110 벌	₩33,842,600
4334	물품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2020/10	자체 조달	제한경쟁	2020년 식자재 업체 선정	[5017200301] 된장	
						1 l	₩89,100,000
4335	물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10	자체 조달	제한경쟁	과학교육연구소 현미경용 미세조작기 구매	[4111174501] 현미경용 미세조작기	
						1 set	₩26,610,000
4336	물품	사회복지법인주라쉼터 2020/10	자체 조달	일반경쟁	2020년도 주라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1015170101] 쌀종자도농품	
						1 포	₩133,290,000

* 나라장터 계약현황 검색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공공기관별 계약체결시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별 계약정보를 검색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품명을 실제로 계약한 공공기관, 계약시기, 공급가격(단가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발주계획은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현황은 실제 계약체결된 건만 검색되므로 실질적인 수요로 구체적인 공급조건 확인이 가능함
- 특정한 품명의 공급을 위해 실제 수요 및 계약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매년 초 연간발주 계획 검색을 통해 확인된 품명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전년도 계약현황을 검색하여 교차 분석 후 발주계획과 계약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발주계획에 따른 품명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입찰 준비 가능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자격지원 ·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 로그인

입찰정보

- 입찰정보
- 수요기관
- 조달업체

입찰정보

물품 ▼

- > 견적요청현황
- > 조달형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 > 발주계획현황
- > 사전규격공개
- > 공고현황
- > 가할결과
- > 최종낙찰자
- > 계약현황

공사 ▶

용역 ▶

리스 ▶

외자 ▶

비촉 ▶

기타 ▶

민간 ▶

견적요청 ▶

계약진행현황 ▶

연기공고 ▶

▶ 물품계약현황

① **검색도움말 :**
계약일자를 지정하면 해당기간의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관	전체 ▼
기관별검색	☒ 계약기관 ☐ 수요기관 찾기 ☐ 특정 기관만 검색
품명	계약방법 전체 ▼
계약일자	검색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단, 검색건수 표시 해제시) 2020/09/15 ~ 2020/10/15 ☐ 최근1개월 ☐ 최근2개월 ☐ 최근3개월
계약참조번호	예) 계약 1~2 호
정렬기준	1. 계약일자 ▼ 목록수 30 ▼ ☐ 검색건수 표시
계약구분	전체 ▼

계약번호 검색		검 색
요청번호 검색		검 색
공고번호 검색		검 색

나라장터

국립중앙도서관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검색

· 사이트맵 · 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입찰정보

수요기관

조달업체

로그인

입찰정보

품목

> 건축요청현황

> 조달청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 발주계획현황

> 사전규격공개

> 공고현황

> 개찰결과

> 최종낙찰자

> 계약현황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촉

기타

민간

건축요청

계약진행현황

연기공고

물품계약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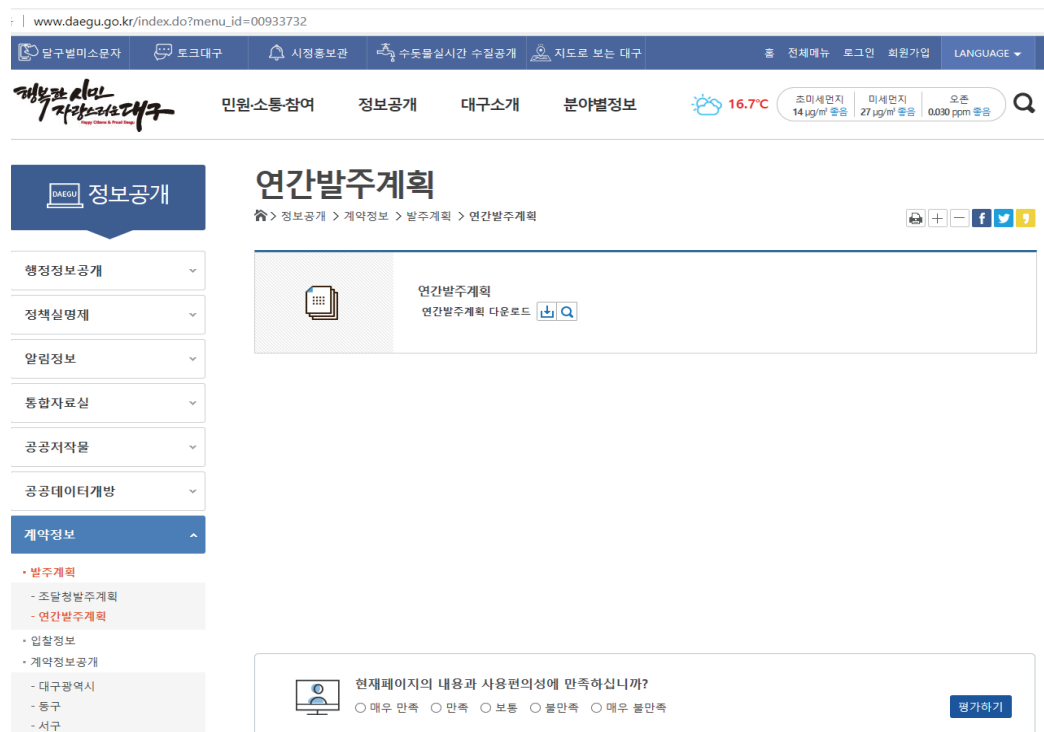
Excel내려받기

계약번호	계약기관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일자
	수요기관	품명		계약업체명
20201004D8500	경기도교육청 수성고등학교	1,878,000(원)	수의계약	2020/10/15
	경기도교육청 수성고등학교	신선도시락		주식회사 모락모락
2020030DB4A0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박송초등학교	0(원)	수의계약	2020/10/1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박송초등학교	도시락		주식회사 키즈앤스쿨
202010045E30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서정초등학교	5,400,000(원)	수의계약	2020/09/0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서정초등학교	신선도시락		드림푸드시스템
202010030A100	경기도교육청 두원공업고등학교	18,955,750(원)	제한경쟁	2020/10/12
	경기도교육청 두원공업고등학교	신선도시락		주식회사 니즈푸드
2020100053	한국조폐공사	2,296,000(원)	수의계약	2020/10/08
	한국조폐공사	도시락		(유)행복한밥상
20201000C4C00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원동초등학교	340,134,300(원)	수의계약	2020/10/07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원동초등학교	신선도시락		주식회사 디에스에프앤비
20200305C4E0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립반다유치원	102,412,800(원)	제한경쟁	2020/09/2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립반다유치원	신선도시락		(주)세종케터링

공공데이터포털(조달데이터개발)

-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조달이 가능한 기관의 발주계획 정보는 조달청으로 중앙조달 요청할 정보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정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모두 검색하여야 함
- * 아래 대구광역시와 같이 연간조달계획을 통합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함





2. 조달요청(조달청-수요기관)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함

3. 조달요청접수 (조달청)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함

- 공개 제외 대상
 -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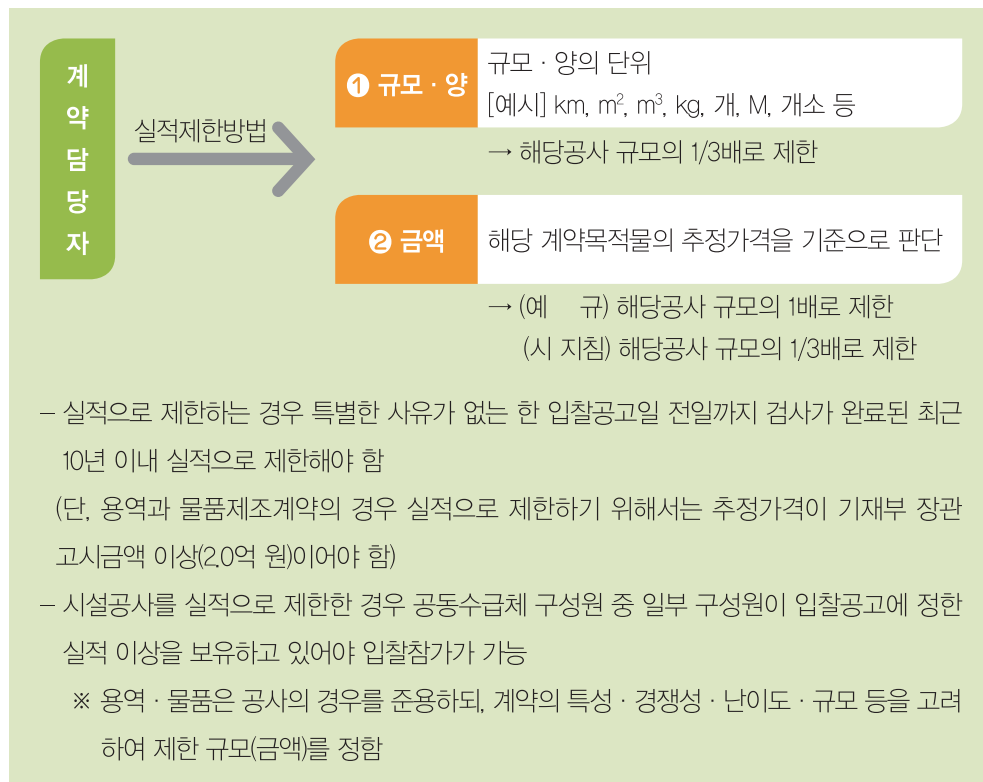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조달청을 기준으로 구매결의 이후 입찰공고 이전에 물품 및 용역의 규격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구매규격 사전예고”를 하고 있음
-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용역의 물품 규격서 또는 용역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내용 중 특정업체에 게 유리하거나 관련 법규 및 대가산정기준(품셈) 등과 상이한 경우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공개적인 의견제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 “구매규격 사전예고” 단계에서 조달업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여부를 담당자가 회신토록 되어 있고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도 실제 물품 및 용역 입찰공고 5~7일 이전에 곧 입찰에 부쳐질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더한 기간만큼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일, 긴급한 경우 3일의 기간 동안 사전규격 공개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연도에 1회 이상 사전규격 공개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음
 - *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함.(통상적으로 반영 여부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회신함)
-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기본 5일, 긴급한 경우 3일 동안 공개해야 하나 긴급한 입찰의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함
 -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규격 공개 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14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전규격공개는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기업들은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과업 내용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필수적 활용이 필요함

－ 구매규격 사전예고 단계 또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중 하나는 물품, 용역 입찰에서 실적제한이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확인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아니나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지급 받는 민간보조사업자도 필요한 물품 및 용역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실적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4. 규격검토 (조달청)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음

5. 구매결의(조달청)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
-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발주기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
-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고시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협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효과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입찰 공고 시점에서 물품과 용역의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낙찰 가능성을 낮출 수 밖에 없음
- 입찰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을 어떤 기관이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공급 가능여부, 입찰을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및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하고자 목표로 하는 수요기관의 직전연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물품 및 용역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요건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임(입찰공고 단계의 발주계획 확인 방법 참조)

7. 예정가격결정(발주기관)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됨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 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pm 2\%$ (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pm 3\%$ (지방계약법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실제 당해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또는 사업예산이 아닌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임
- 예정가격은 낙찰단계에서 적용받는 적격심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서 낙찰하한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입찰공고 시점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대략적인 예정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기초금액, 복수 예비 가격 산정범위(국가계약법 $\pm 2\%$, 지방계약법 $\pm 3\%$)를 고려한 예정가격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낙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임

8. 입찰(발주기관)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로 진행됨

재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20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실효과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입찰 공고 시점에서 물품과 용역의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낙찰 가능성을 낮출 수 밖에 없음
- 입찰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을 어떤 기관이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공급 가능여부, 입찰을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및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임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하고자 목표로 하는 수요기관의 직전연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물품 및 용역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요건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편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므로 입찰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지문등록을 완료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발주기관 – 조달업체)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함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발주기관)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하게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생산대금 등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공 구매론(자세한 정보는 4장 공공구매론을 참조)을 이용할 수 있음

11. 납품준비(조달업체)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물품 납품 시 계약서상 규격, 시방서 및 제반조건과 맞는 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실상 품질 및 기능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규격서, 시방서와 일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정상적 활용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12. 납품(조달업체)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발주기관 – 조달업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계약서상 납품일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검사/검수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함
- 검사/검수요청서가 계약완료일(납품일이 동일한 경우는 납품일) 이전 송부되지 않으면 검사검수기간이 지연되거나 대금지급 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음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발주기관 - 조달업체)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가 검사검수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유인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검사검수 기간이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 납품된 물품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보완요구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4일, 최대 21일 초과하는 경우 조달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신속한 검사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면 검사합격증/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납품 이후 적기 대가 미확보로 어려움 발생 예방 필요함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발주기관 - 조달업체)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함

16. 대금청구 및 영수(조달청 - 조달업체(계약상대자))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수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함.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검사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에게 검사/납품 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거로 발주기관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 신청 후 5일 이내(업무일 기준)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쌍방이 합의한 경우 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대금지급 요청 후 최대 10일 초과하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적기 지급 요구 가능

17. 계약종결(조달청 해당)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함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 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함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함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조달청 - 공공기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함

2.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2.4.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요

정의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자료를 제출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기타주요내용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⑤ 단계별 업무절차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 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2	조달청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조달업체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	MAS협회에서 접수·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조달업체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온라인 처리)
	조달청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6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7	조달업체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8	조달업체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9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⑥ 관련 규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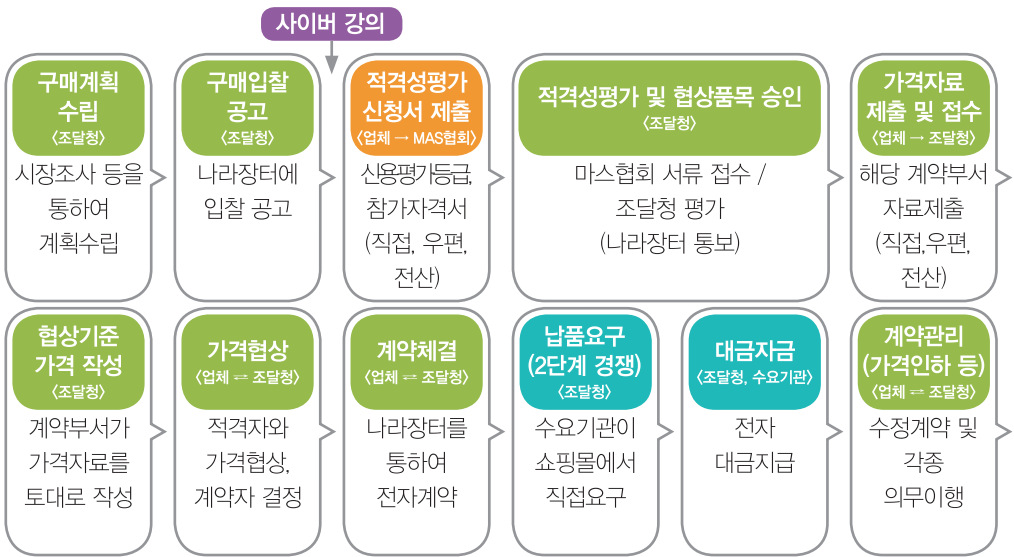
훈령	고시	공고 및 기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 1945호, 2020.09.2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20-39호, 2020.09.2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 조건(조달청 공고 2020-206호, 2020.09.29.)
	• 국 가 중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 시 제2018-22호, 2018.12.12.)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 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02.16.)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8-17호, 2018.11.12.)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구매총괄과-5901, 2020.09.29.)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고시 제2017-16호, 2017.07.20.)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 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6-111호, 2016.11.11.)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888호, 2019.11.01.)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9-15호, 2019.11.01.)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19-179호, 2019.11.01.)
		•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 140호, 2020.07.09.)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 33호, 2020.09.25. 개정)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 조건 개정(조달청 공고 제2020- 201호, 2020.09.25. 개정)
	•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4호, 2020.09.25. 제정)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20-202호, 2020.09.25)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9-14호, 2019.10.08.)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19-023호, 2019.01.31.)

2.4.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관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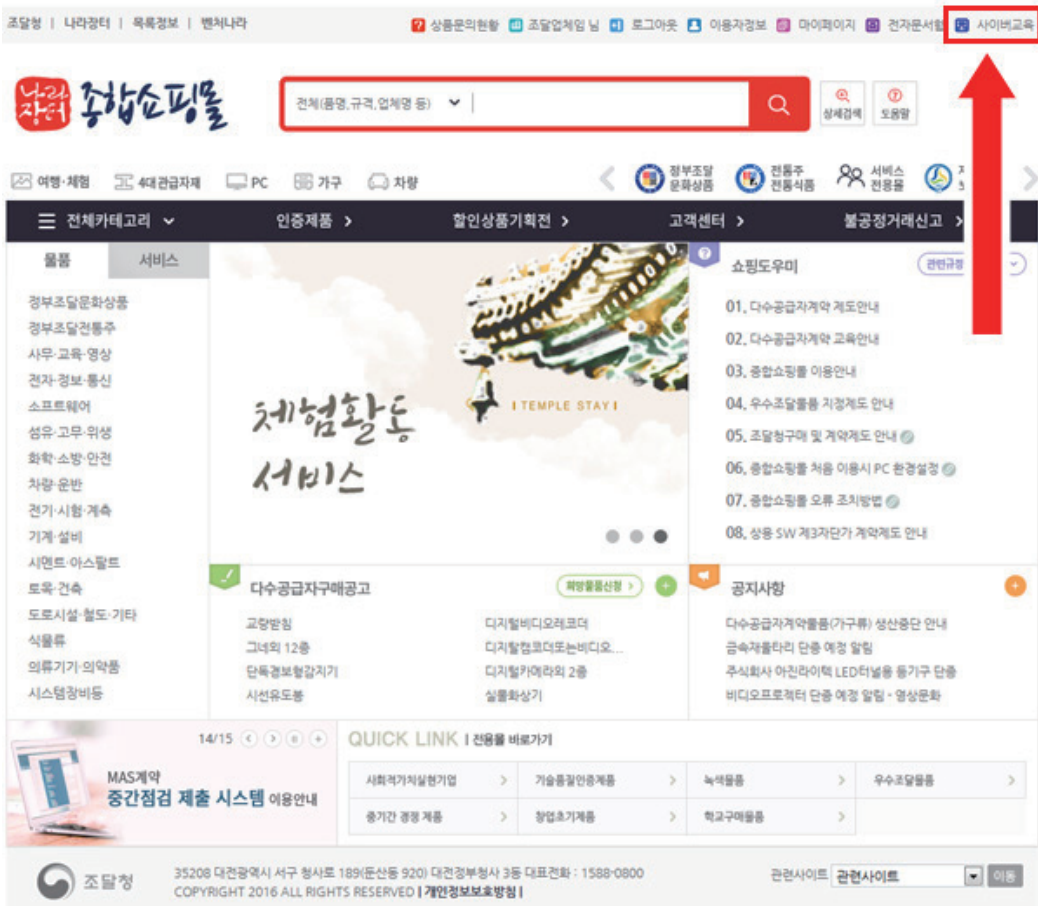
사이버 MAS 교육

- 기본교육으로서 사이버MAS교육 의무수강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미숙지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 교육과정 개설, 운영



- 교육과정명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 교육대상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조달업체 (수요기관 담당자는 수강할 수 없음)
- 교육방법
 - 나라장터 인증서로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 접속 후 수강 및 평가, 60점 이상 획득 시 수료
 - 교육과정 접속 : 종합쇼핑몰 우측 상단 "사이버 교육"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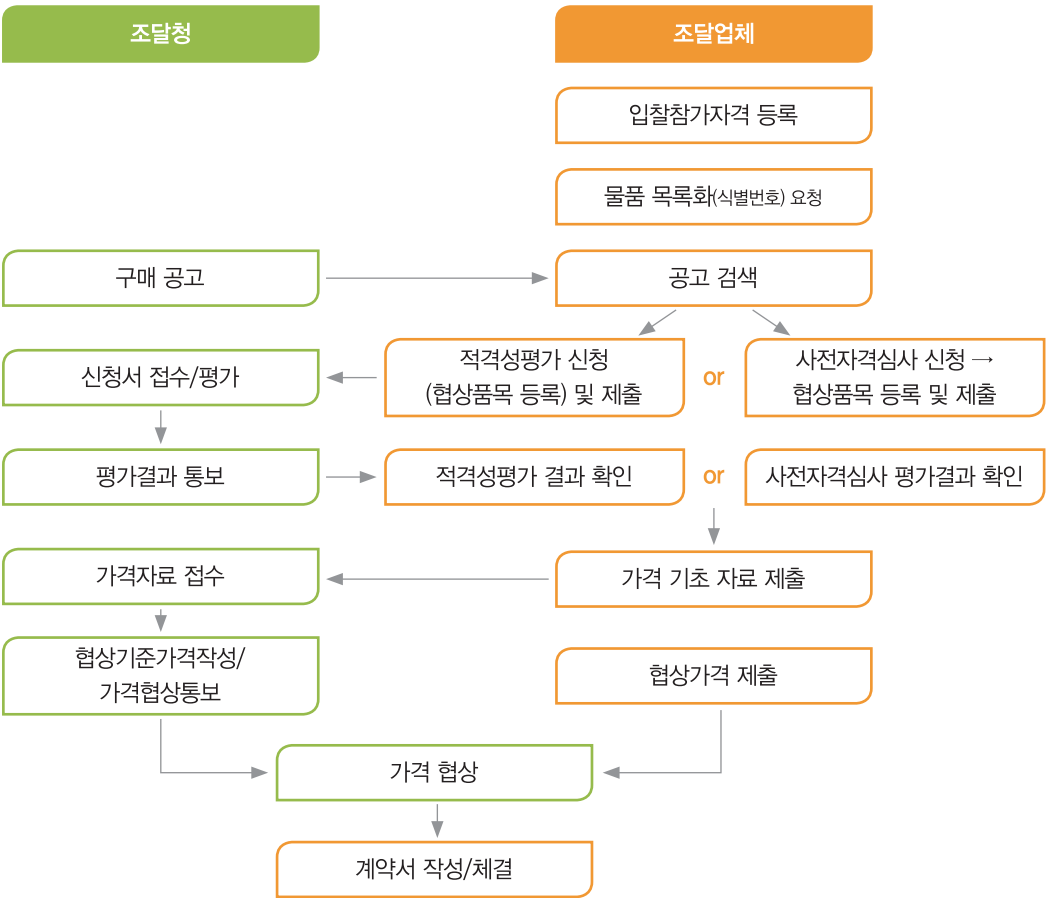


- 수강 및 평가
 - 평가문제는 25문제이며 평가에 불합격 시, 재수강 및 평가에 재 응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결과 활용
 - 교육수로 현황을 DB화하여 적격성평가 및 PQ 평가 시 활용
 - '12.7.1. 이후 적격성평가 및 PQ 신청자는 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4.3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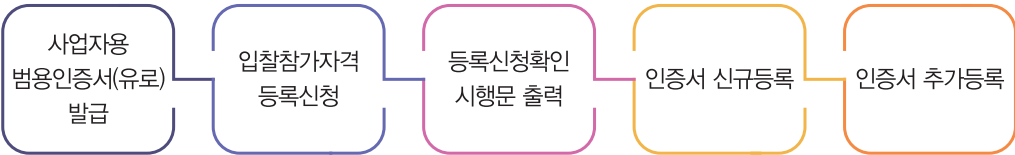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9조(적격성평가 및 규격서 제출) 5항,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 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4.4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체결 절차



1.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업체)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2. 물품목록화(조달업체)

- 물품목록화는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물품이 나라장터의 상품검색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계약체결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공급물품 및 용역의 물품목록화 여부를 확인 필요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main/main.do>) 접속하여 공급 물품 또는 용역명으로 검색하고 미등록 된 경우 “목록화요청” 메뉴를 통해 계약희망 물품 또는 용역을 등록함



* 목록화에는 2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납품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면 납품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여유를 두고 등록하여야 함

3. 구매 공고(조달청)

- 물품목록화가 완료된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계약을 희망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입찰공고와 달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물품과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클릭하면 나라장터 상세공고로 연계됨



4. 공고검색(조달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업체가 계약 희망하는 물품과 용역의 구매공고는 10자리로 구성된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므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 구매공고가 검색되면 “공고서 상세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공고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자격을 평가받기 위한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하기” 메뉴 클릭
- 공고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체결 후 등록된 물품과 용역을 검색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 담당과 및 담당자에게 구매공고 관련 문의 가능

적격성 평가/사전자격심사 물품선택

[구매대상 물품]

공고번호	20170320462-00	공고명	교실용결상외 17종
공고게시일자	2017/ 03/ 29	자료제출1차 마감일자	2017/ 04/ 05

도움말

1. 자료제출 1차 마감일이 경과하여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평가구분 항목을 확인하셔서 적격성평가건과 사전적격심사건을 구분해서 선택후 신청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구분 항목 : 적격성평가, 사전적격심사.

NO	G2B 분류번호	G2B 분류명	세부품명	구매 예산수량	단위	참가자격	품명 선택	평가구분
				인도조건	납품일수			
1	56121502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100,000.000 현장설치도	개 30일	제 조업체	☐	적격성평가
2	56121506	학생용책상	학생용책상	100,000.000 현장설치도	개 30일	제 조업체	☐	적격성평가
3	56112108	책상용품비의자	책걸상	100,000.000 현장설치도	개 30일	제 조업체	☐	적격성평가
4	56101520	로커	사물함	100,000.000 현장설치도	개 30일	제 조업체	☐	적격성평가
5	56101520	로커	군용사물함	100,000.000 현장설치도	개 30일	제 조업체	☐	적격성평가

나라장터

국가공정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검색

조달업체명

10.139.3.136

로그아웃

문명

id Center

e-고객센터

원격지원

사이트맵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이동

입찰정보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바촉

기타

민간

연기공고

견적요청

통합정보제공

나라장터

나라메뉴

문서함

입찰정보

적격성평가 신청서

※ 메뉴경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

공고명

교실용월상의 17종

적격성평가번호

20174000001

평가대상물품

공고번호

20170320462-00

공고일자

2017/ 03/ 29

연계여부

연계사유

에

에

아니오

목록과 신청

신청하기

수신지침

조달청(본청)

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9992100104

상호

테스트51연합_123456

대표자명

박혜빈빈

연태구분

연태구분

연태구분

담당부서명

직위

FAX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신청확약사항

신청확약사항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계약자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가심사표 및 제품명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합과 같이 적성 제출하며, 입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실히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것음을 확약합니다.

자가심사표

물품추가

납품실적증명원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결격여부

1

5612150201

교실용월상

개

미심사

자가심사표

삭제

※ 작성하러면 상하단의 자가심사표를 클릭하시면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삭제

재입찰하기

합성등록>>

목록보기

6. 적격성평가결과/사전자격심사평가결과 확인(조달업체) / 결과통보(조달청)

– 적격성 평가와 사전자격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 물품 > ② 계약 관리 >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 ④ 적격성평가 / 사전자격심사(해당 메뉴 중 선택) > ⑤ 처리 상태 확인 > ⑥ 적격성평가번호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나라장터 국가공급관리시스템
Korea GPN-Lite 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일할정보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축 기타 민간 공통 나이나라장터 나의메뉴 문서함

조달업체업무

- 물품
 - > 견적요청
 - > 견적요청
 - > 실적심사
 - > 투찰관리
 - > 실적심사
 - ② 계약관리
 - > 계약(결)관리
 - > 중앙조달계약변경관리
 -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 > 사전자격심사
 - ④ 협상품목 등록관리
 - > 적격성평가기준
 - > 적격성평가
 - > 가격기초자료제출
 - > 상품정보등록
 - > 원상가격제출
 - > 할인행사신청
 - > MAS계약가격조회
 - > 중간검정 자료제출
 -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 견적주문관리
- > 중앙조달 납품관리
- > 문서배경
- > 검사/검수
- > 대금청구
- > 보증증답서등록
- > 목록다운로드
- > 자재원가계산
- > 계약인합 위치정보
- > 검사검정 진행단계조회
- > 자기품질보증업체신청
- > 직접생산확인검정
- > 검사면제

협상품목등록요청목록조회

다수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14.3.6) 제4조에 의거하여,
다수공급자에게 세금 전달까지 국세청 이체로서 귀 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방법]

- 국세청 이체서(www.esero.go.kr) 접속(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과 동시에 자동제공동의 팝업창이 뜨면 '동의함' 클릭 후 '확인'
(팝업창이 뜨지 않을 경우, 웹브라우저에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팝업해제'해야 함)
* 본 팝업은 협상품목 승인요청 일일부터 포출됨.

No.	문서번호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공고명	제출일자	처리상태	품목추가 여부
1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2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3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4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5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6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7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8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9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10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2014년 1월 24일	[과제명]	2014년 1월 24일	[완료상태]	Y

7. 가격 기초자료 제출(조달업체) / 가격자료 접수(조달청)

-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협상품목으로 등록한 계약희망 품명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에 로그인하면 제출하여야 할 가격자료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제출 가격자료는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를 미리 준비하여야 함
 - * 가격자료는 조달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체결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
-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 물품 > ② 계약관리 >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 ④ 가격 기초자료 제출 ⑤ 문서번호,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공고명, 작성일자, 상태 중 하나 이상으로 검색
 - * 검색을 하지 않으면 적격성 평가(사전심사) 완료된 전체 리스트가 조회됨
 - * 적격성 평가(사전심사) 신청이 평가완료 되면 목록에 미작성건이 생성됨
- ⑥ 처리상태(미작성) 확인 후 ⑦ 문서번호 또는 적격성 평가 번호 클릭함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사이트맵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이동

입찰정보 ①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축 기타 민간 공통 나의나라장터 나의메뉴 문서함

조달업체업무

물품

계약요청
제안요청
실적심사
투찰관리
적격심사

② 계약관리
계약체결관리
중양조달계약변경관리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관리
적격성평가(기존)
적격성평가
④ 가격기초자료제출
상품정보 등록
협상가격제출

협상현황 목록조회

적격성평가번호 [] 공고번호 []
분류번호 [] 찾기 물품분류명 []
가격협상일자 [] ~ [] 상태 전체 ⑤ 검색

⑦ [검색결과 수: 2건]

No.	⑦ 적격성평가번호	협상차수	공고번호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협상횟수	협상일자	⑥ 상태	품목추가 여부
1	20174000001-00	01	2017032046200	56121502	교실용결상 17종	3	2017/04/10	미협상	N
2	20161010101-00	01	20161010101-00	56121502	교실용결상 17종	3	2016/10/23	협상완료	Y

8. 협상가격 제출(조달업체) /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통보(조달청)

- 가격기초자료 제출 후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협상가격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짐
-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 물품 > ② 계약관리 >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 ④ 협상 가격 제출 ⑤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가격협상일자, 상태 중 하나이상으로 검색
 - * 검색을 하지 않으면 전체 리스트가 조회됨
- ⑥ 상태(미협상) 확인 후 ⑦ 적격성평가번호를 클릭함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사이트맵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이동

입찰정보 ①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축 기타 민간 공통 나의나라장터 나의메뉴 문서함

조달업체업무

물품

계약요청
제안요청
실적심사
투찰관리
적격심사

② 계약관리
계약체결관리
중양조달계약변경관리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관리
적격성평가(기존)
적격성평가
④ 가격기초자료제출
상품정보 등록
⑤ 협상
협상기준가격작성
협상가격제출

협상현황 목록조회

적격성평가번호 [] 공고번호 []
분류번호 [] 찾기 물품분류명 []
가격협상일자 [] ~ [] 상태 전체 ⑤ 검색

⑦ [검색결과 수: 2건]

No.	⑦ 적격성평가번호	협상차수	공고번호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협상횟수	협상일자	⑥ 상태	품목추가 여부
1	20174000001-00	01	2017032046200	56121502	교실용결상 17종	3	2017/04/10	미협상	N
2	20161010101-00	01	20161010101-00	56121502	교실용결상 17종	3	2016/10/23	협상완료	Y

9.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해당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된 3개 이상의 업체가 존재하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됨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입찰정보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속 기타 공통

나의 나라장터

Bid Center

업체정보관리

자문보안토론

인증서관리

사용인감등록및변경관리

공지/게시/자료

나의 메뉴설정

알림이/뉴스레터

받은 문서함

보낸 문서함

결재문서함

문서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0건의 보기

기간별

2012/12/31

2013/01/31

※최대 1년 단위로 설정가능

전체

삭제된 문서보기

조회

1166 개 문서 중 미 개봉된 292 개의 문서를 개봉처리 하여 주십시오 [Page 1 / 117]

원본확인원리

출력

통합문서 및 이관

메일로 전송

압축파일받기

삭제

번호	송신자	문서명	문서번호/공시명	전송일자	문서상태	첨부
1	C13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 변경계약서(초안)	2012121913201 test	2013/01/31 17:30:26	미개봉	0
2	C135370100005 조달청공지	검수반려통보서	검사검수20120420 1년	2013/01/31 17:14:06	미개봉	0
3	C13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계약서(초안)	2008010010600 계약건	2013/01/31 16:54:32	개봉	0
4	C13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계약서(초안)	2013013549700 노트북 구매 모의공고-11	2013/01/31 16:52:06	미개봉	1

물품계약서(초안)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한다.

<계약자>

<발주처>

조달청공지

계약관

담당자명 : 수요기관

담당전화 : 042-2511-5551

담당팩스 : 042-2511-2222

<계약상대자>

대표자 : 오여원

상호 : 테스트51연합_1234567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10511

사업자등록번호 : 9992100104

주민등록번호 : 790830*****

전화번호 : 2222-4056-7163

팩스번호 : 042-367-8359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 :	추경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계약번호 :	2013013549700	구매관리번호 :	20120826462
계약건명 :	노트북 구매 모의공고-11		
품명 :	노트북컴퓨터	수량 :	40
계약금액 :	36,000,000 원	수수료 :	원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 10일	지체상금율 :	0.15 %/일
납품기한 :	계약후: 10 일	분할납품:	가능
수요기관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검사기관 :	조달청공지	납품장소 :	지정장소
지급방법 :	직불	계약구분 :	총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			
부가정보]			
인지세액(과세대상여부) :	40,000 원 (Y)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	720,000 원 (지역개발채권)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	계약보증금 :	3,600,000 원

특기사항 :

첨부분서]

No.	문서명	파일명
1	테스트	test.txt

계약물품명세서

No.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지역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수요기관	납품기한(납품일수)
			기타			
1	43211503		노트북컴퓨터	규격서참조		대
	납품장소도	40	900,000	36,000,000		10 일

합계

출력

내려받기

이전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음

의의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의 촉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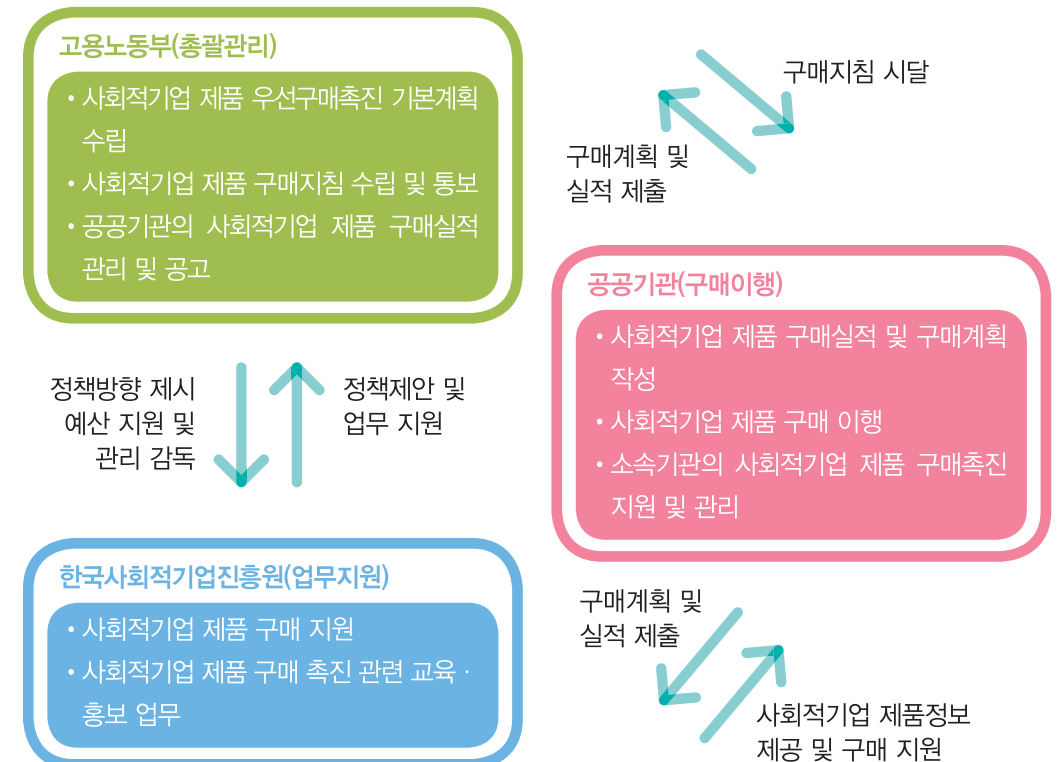
목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년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추진체계



☎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847개 공공기관

〈 '20년 구매실적 및 '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

국가 기관	자치 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 관	기타 공공 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특별 법인	총계
	광역시	기초								
54	17	226	17	36	95	209	152	35	6	847

☎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20.11월 기준 2,704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표시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요의 발생, 구매대상 품목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짐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제품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하여 공급전략 수립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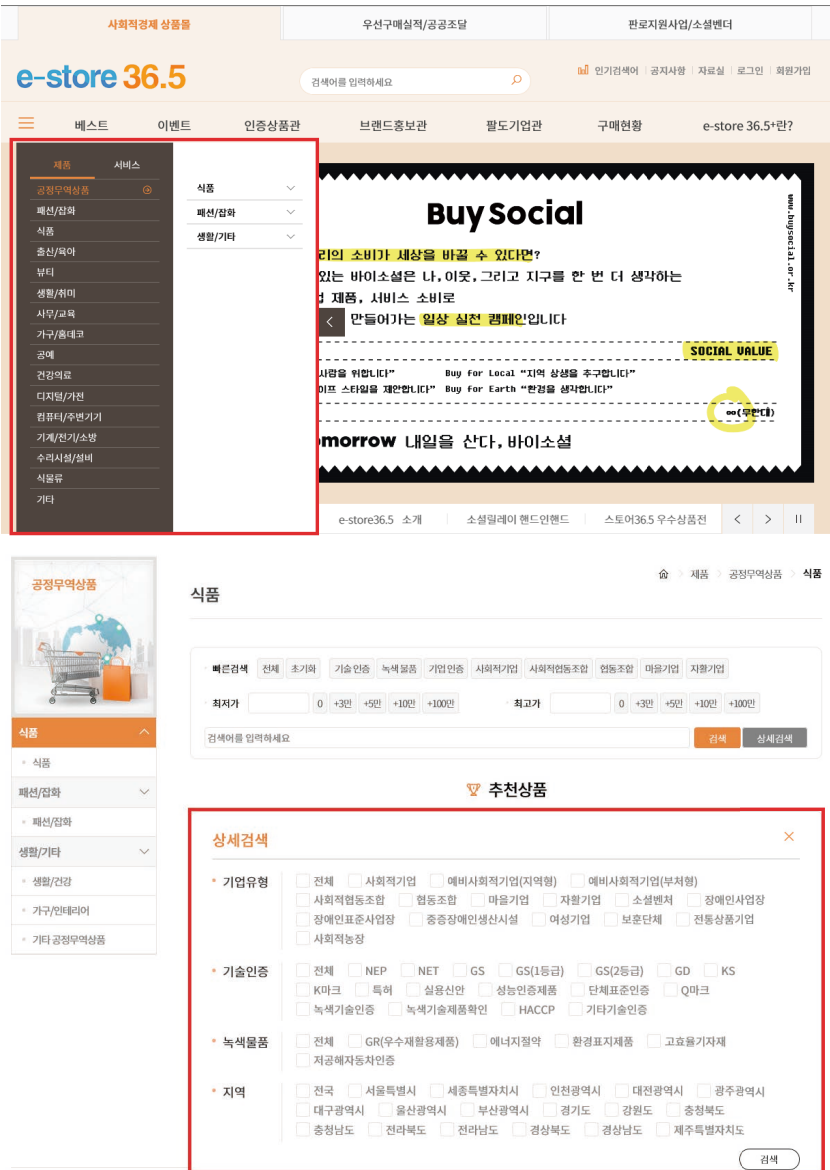


1단계: 구매대상 품목 확인 (온라인/오프라인/공공구매지원센터)

- 온라인
 - e-store 36.5(www.sepp.or.kr) 사회적경제 상품몰 접속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상품명, 기업명)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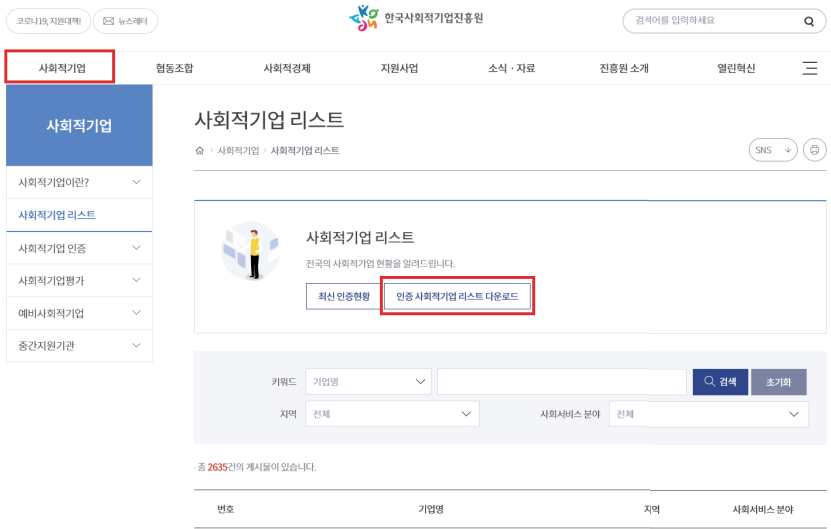


- (상품 찾기) 중분류 또는 소분류 카테고리 메뉴로 상품 및 상품 상세정보 (기업유형, 기술인증, 녹색물품, 지역필터, 가격필터 등) 검색



- (사회적기업 찾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검색메뉴에서 '기업명', '지역', '사회서비스분야' 검색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전체 사회적기업 확인 및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오프라인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2020년 11월 기준)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닷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쿠팡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쿠팡>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 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22	경기	시흥 정왕점	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드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셰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강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벌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 공공구매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상담(☎1566-5365)

2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간접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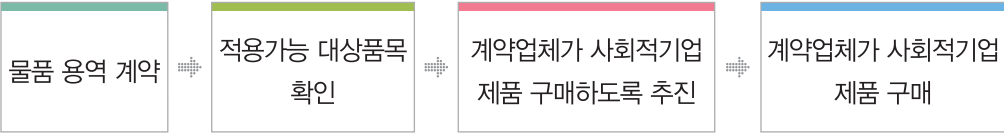
–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제출 불요)

〈간접구매 절차〉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 활용 가능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건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 까지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18.7.2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19.3.5))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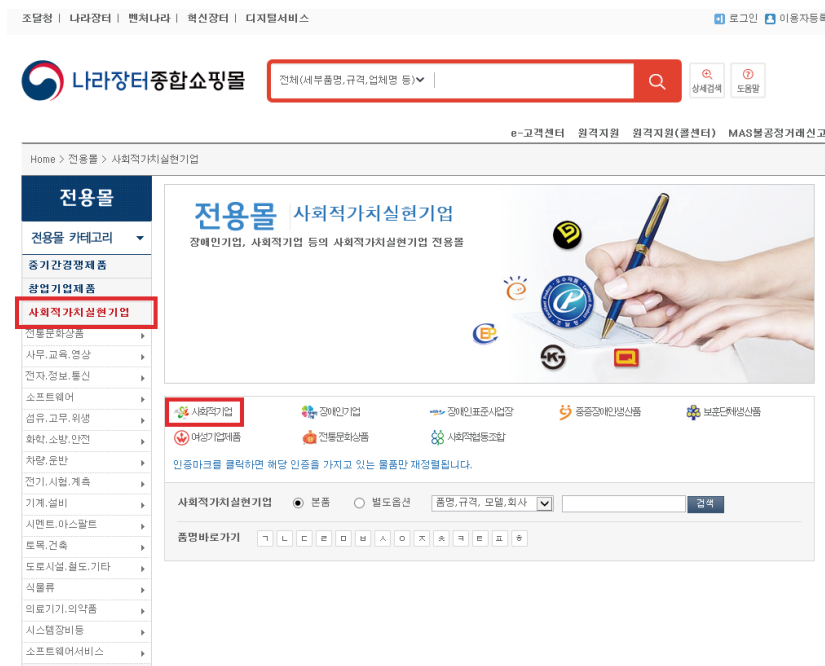
–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추진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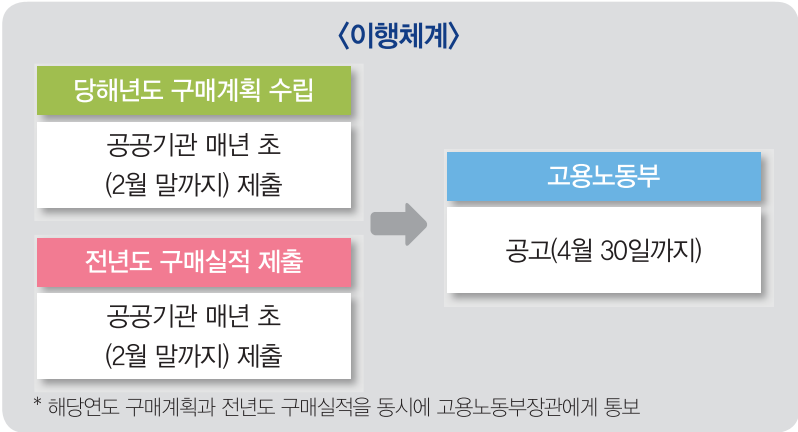
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 ‘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희망상품 추천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구매 및 사업 추진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전국 88개소)에 문의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한 사이트)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활용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



주요 사항

- 2019년 실적 – 1조 2,829억원, 총 구매액의 2.50%
- 2020년 계획 – 1조 2,989억원, 총 구매액의 2.55%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2019년 실적	51,255,571	1,282,950	2.50
2020년 계획	50,898,279	1,298,954	2.55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원, %)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국가기관	10,284,315	88,208	0.86	9,355,788	73,499	0.79
자치단체	7,442,333	460,178	6.18	7,524,428	467,556	6.21
교육청	7,240,766	135,774	1.88	7,133,989	136,275	1.91
공기업	13,166,007	336,496	2.56	13,800,664	357,011	2.59
준정부기관	4,503,283	156,745	3.48	3,826,123	143,417	3.75
기타공공기관	5,893,238	53,608	0.91	5,894,292	74,730	1.27
지방공기업	2,263,160	45,186	2.00	2,834,454	40,772	1.44
지방의료원	232,840	5,848	2.51	227,003	5,553	2.45
특별법인	229,630	906	0.39	301,536	141	0.05
합계	51,255,571	1,282,950	2.50	50,898,279	1,298,954	2.55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 구매실적 자료의 활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수요기관의 실적 비중 49.6%(636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비중 50.4%(6,470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재 지역 또는 근방의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같이 자체조달 비중이 높은 기관의 조달 실적이 전체의 93.1% 이상인 1.19조원이므로 새로운 공급기회를 탐색한다면 국가기관 등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속한 지역 주변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각 기관의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구매실적과 차년도 구매실적의 증가수준과 절대비중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절대 구매금액과 증가율이 큰 공공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매년 4월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 계획”(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90호, 2020.04.27)의 붙임 자료인 “공공기관별 2019년 구매실적 및 2020년 구매계획”에서 2019년 실적과 2020년 계획을 비교하여 기존 구매 실적이 많거나 차년도 구매계획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출 계획 수립
-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기관평가시 일반적으로 경상비용의 3%(중앙기관) 또는 전체 시설공사 금액을 제외한 물품과 용역 구매금액의 1%(지방공기업) 이상이 될 경우 만점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준 미만 금액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용역을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대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구매 물품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이 아닌 사회적기업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 중에서 공공기관 등이 새롭게 수요로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4장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 4.1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4.4 직접생산확인제도
-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 4.8 공공구매론
-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제4장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 공공계약 대상으로서 우선구매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우선구매 고려사항을 결합한 고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4.1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1.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지정 요건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 ③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

3. 지정절차



- 지정기간 : 3년
- 지정현황 : 중소기업부 공고 및 고시(2020년 9월 기준 217개품명/631개 제품)
-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 중소기업부(본부) : 042-481-4546, 4434



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임
- 현재 모든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들이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특히 물품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가능함
-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포함한 제도
- 2020년 9월 현재 총 217개 품명 617개 세부품명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생산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특히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서류로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획득해야하는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 개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중에서 지정

-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건설 및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3억원이상 공사
- * 적용대상 공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 (단, 세부품목 추정 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구매 가능)
- 지정기간 : 3년
-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2020년 9월 기준 114개품명/385개 제품)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 중소벤처기업부(본부) : 042-481-4546, 4434

3.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간경쟁이 가능토록 해주는 중소 중소기업자가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공부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 122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 중 일반 물품과 용역이 아닌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
- 대규모 공사에서 공사 부문과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품구매 공고가 아닌 시설공사 관련 공고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로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는 입찰에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함께 시설공사 수주업체가 소요하는 물품을 시설공사 수주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매기회 확대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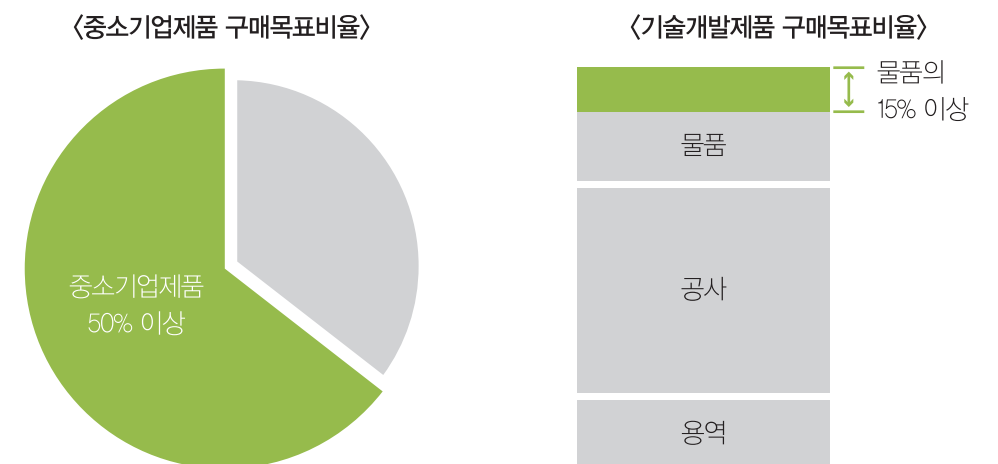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 도입배경

-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 효과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물품의 **15% 이상**으로 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4468)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02-2656-9991)

4.4 직접생산확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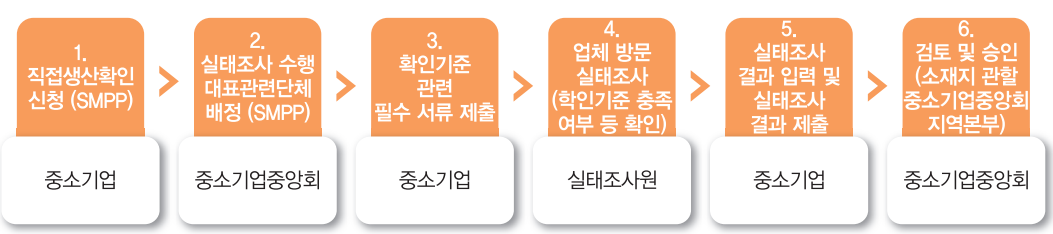
1. 목적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방법**
 -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운영요령 제30조제7항)

3. 확인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02-2124-3250~6)

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물품과 용역,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임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자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위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 2020. 4. 8., 일부개정)” 참조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설립이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공정, 인력 등이 요건이 충족 가능한지를 사전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1. 제도 개요

-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입찰참여 중소기업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주요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경쟁,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입찰참가 자격
 -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심사기준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 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신인도 3 ~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1항
-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점수를 30점으로 평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10억원 이상	총 45점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55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3 ~ -2점	당해 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30점
10억원 미만	경영상태 30점	70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434, 6864

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반적인 물품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낙찰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격심사”제도를 시행함
- 적격심사제도는 물품을 공급하려는 업체의 제조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적정 제조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가격만을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제조역량, 품질을 우선 평가하는 제도임
- 그러나 적격심사를 통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이 80% 초중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충분한 공급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움
-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는 이러한 일반적 적격심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낙찰하한율이 88%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한 평가방법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자간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뿐만 아닌 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에 있는 납품이행능력과 관련된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등 신인도 가점 평가항목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통과기준 점수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⑧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⑨ 혁신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임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21, 5623, 5627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 제도 개요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① 성능인증(EPC) ② 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③ 신제품인증(NEP) ④ 신기술인증(NET) ⑤ 우수조달물품 ⑥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⑦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⑧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⑨ 녹색인증 ⑩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 산업융합품목 ⑫ 개발선정품 ⑬ 성과공유 기술과제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⑭ ICT융합 품질인증제품 ⑮ 산업융합 적합성인증제품 ⑯ 우수산업디자인제품 ⑰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5.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성능인증제품 등의 인증을 받아 공급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향후 잠재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
- 2020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 목표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 이상)이 설정되어 추가적인 공급기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수요기관과 함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과 협약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별도의 개발자금도 지원하고 있음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1. 제도 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2. 주요인증 내용

○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 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 가능)

○ 성능보험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 기피 현상을 방지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3. 성능인증 절차



4.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콜센터 02-2656-9991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41 ~ 7

5.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기술개발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은 품질 불확실성, 사후지원(A/S) 곤란 등의 문제로 감사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구매의사 결정을 주저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성능인증을 부여하고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능보험제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납품실적, 품질 등의 측면에서 평판 및 신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에서는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구매 의사결정에 부담을 해소하여 공급기회 확대 가능
 -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파란우산공제”, “PL단체보험”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공 및 민간에서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공급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제도 활용 가능
-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나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가 구매와 관련하여 염려하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가능함

4.8 공공구매론

1. 개요

-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을 도모하게 하는 시스템

2. 주요내용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예외) 기업은행

-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의 80% 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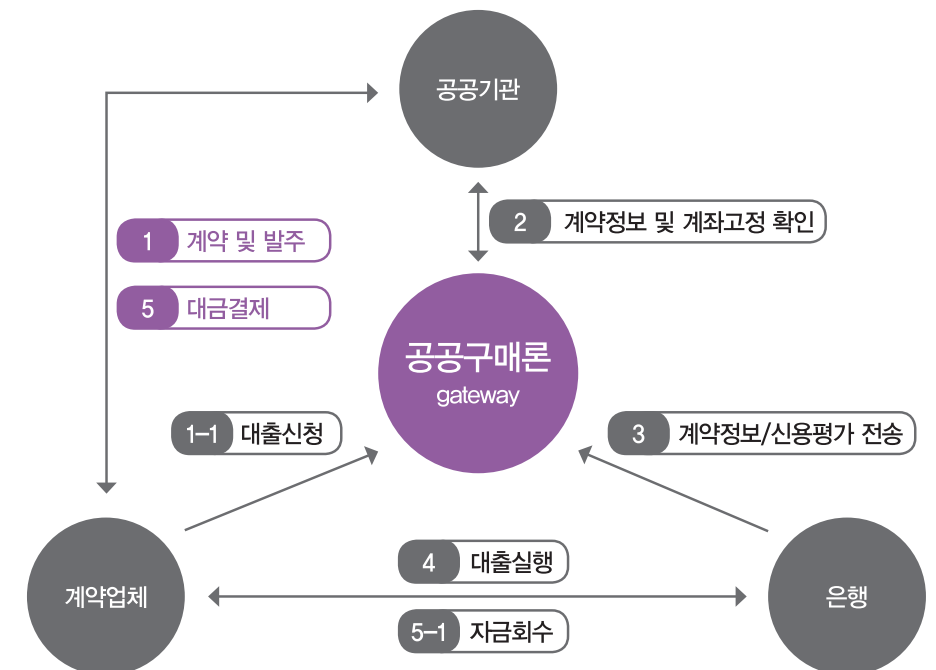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대출대비 저렴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고객의 이용 편리성 제공(www.smpp.go.kr)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3.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 문의처
 - 운영기관 : 콜센터 02-2656-9991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 042-712-5623 | 중소기업부 제도 담당자 042-481-6864



4.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확보하더라도 생산을 위해 필요한 관련 원부자재 등의 구매 등 구매비용 등이 충분이 없을 경우 공공구매론을 활용하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공공구매론은 수요기관과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사전 약정을 맺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생산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실질적으로 다른 대출과 달리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음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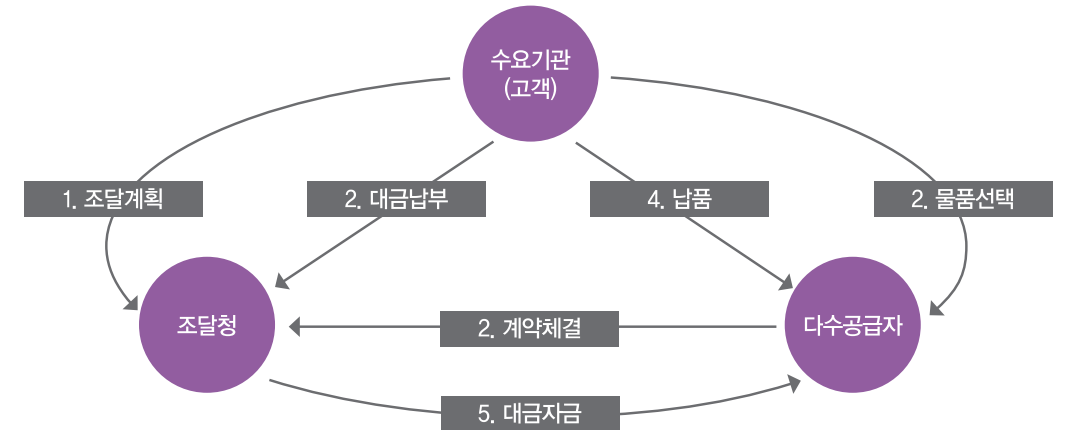
1. 개요

- 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는 제도
 -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2. 내용

-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대상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과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 계약대상자 선정
 - 적격성심사를 거쳐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다수 적격자와 계약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주요특징

1.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이후의 경쟁성 제고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 에게 납품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2. 대상물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계약상대자 선정

-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이상인 자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체결

4.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

5. 계약단가 인하

-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

6.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을 적용

-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을 제시할 수 있음

7.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8.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 문의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070-4056-7273)

9.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공공조달을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 중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시장에서 상용화 또는 규격화 되어 품질 및 가격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조달청에서 생산업체와 제품을 미리 심사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대상물품이 등록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회적기업이 초기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추진 노력 필요
 - 사회적기업이 물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 구매 및 공급 과정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신규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중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영역을 사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 “전용몰(메인화면 우측 하단)” → 전용몰 카테고리 “사회적가치실현기업(메뉴 중 좌측 하단)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촉진법 제 6조에 의거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주요내용

- 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스템’을 통해 처리
-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업체의 ‘추천신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 (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 개요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2

2. 내용

-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억원) 미만 물품·용역(중소기업 경쟁제품 제외) 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2-481-8919)

3.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 중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국제입찰 대상 미만 금액, 즉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입찰에서는 중소기업자들만 우선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회적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모든 유형의 물품과 용역 공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 개요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여야 하나 특정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주요내용

※ 아래 두 경우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여도 무방함

1)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별도 지정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546, 4434

2) 조합과의 공동사업

- 3인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구매액수 제한없고, 그 외의 제품은 2억원 미만 구매건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단,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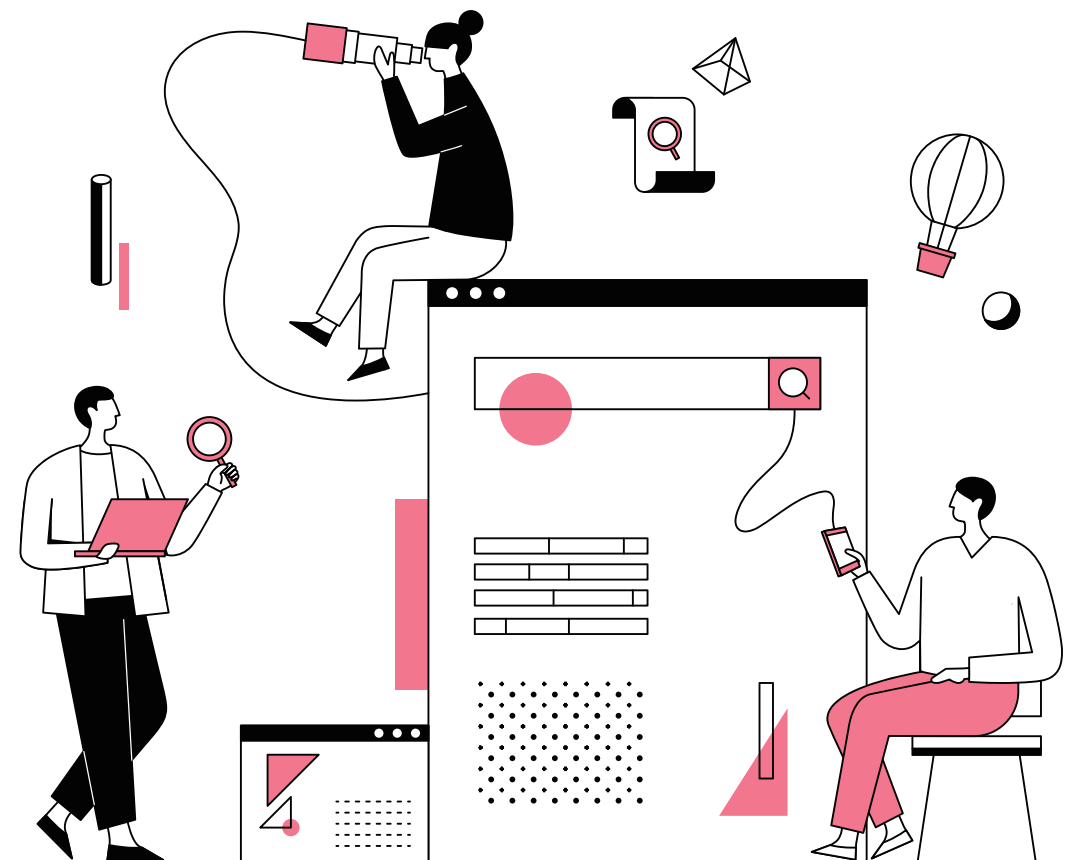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8호, 2020. 10. 8., 일부개정]
- 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5. 4., 2017. 7. 26., 2019. 11. 18., 2020. 3. 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본조신설 2013. 6. 2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02-2124-3241, 3242, 3246)

3.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물품보다는 용역 부문, 특히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 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에 특화 및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기존 물품의 경우는 타 우선구매제도 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선발 참여자로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용역(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추구가치와 높은 적합도를 보유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서비스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 제도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

5.4 단체표준제도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평가
(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 9. 29., 일부개정)

(단위 : 점)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 제도

5.1.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은 신인도 평가 부문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적용 받음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모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0.2
		E. '삭제' <2019.12.31.>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1.0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1.0
		K. '삭제' <2019.12.31.>	1.0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5.1.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시 낙찰자선정 평가기준인 계약이행 능력심사에서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모두 적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정책지원 부문) 평가(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 9. 29.,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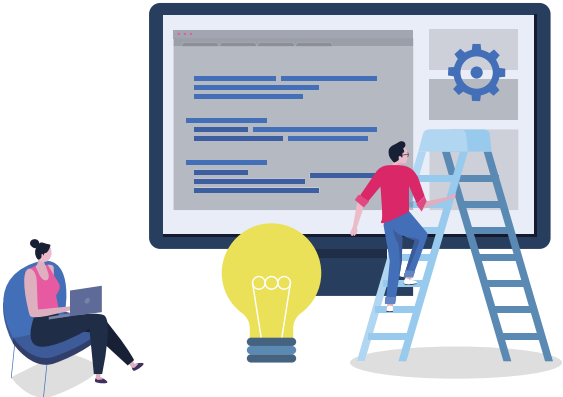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H. ‘삭제’ <2019.12.>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1.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5.1.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대표적 용역 중의 하나인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일반용역 입찰 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 부여
 - 2018년 4월부터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외 추가로 자활기업, 마을 기업도 2점 부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조달청공고 제2020-30호, 2020. 7. 9., 일부개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2.0
		B.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D.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5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1.0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1.0
		J.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1.5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5.1.4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용역과 달리 건축설계, 시공감리, 엔지니어링(플랜트 등)용역과 같은 기술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0.2점의 가점 부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 9. 29., 일부개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마.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5.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시설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경영상태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여 평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543호, 2020. 5. 26., 일부개정]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5.1.6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공공조달 물품 조달업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계약방법인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을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평가배점의 1배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20-39호, 2020. 9. 29., 일부개정)의 종합평가방식에서 정책지원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요기관이 정책지원 평가항목에 부여한 배점의 한도만큼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종합평가방식에서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선택평가항목 중 “정책지원” 평가 항목은 최대 5점까지 배점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기업 등은 최대 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평가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 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선택 평가 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기술 인증	+1점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정책지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정책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G-PASS기업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종합평가방식이 아닌 다수의 수요기관의 평가기준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조달청이 평가중점별 표준화한 표준평가방식 중 유형 3의 경우는 기본평가항목으로 “정책지원” 평가항목에 대해 5점을 배점하고 있음
 - “표준평가방식 3”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평가방식에서 “정책지원”항목과 상관없이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5점을 기본 평점받을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유형3(Ⅲ)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5.2.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행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받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06.12., 일부개정]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 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0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1.0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0.8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0.6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J.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0.5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0.3

5.2.2 일반광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중 일반광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일반광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최소 0.5점 ~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적용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평점
다. 사회적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1.0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5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1.0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1.0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1.0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5
경상남도(일반광역)	평점(점)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0.5
(2)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0.5
(3)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0.5
(4)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경상남도(청사관리용역)/사회적경제기업 가점외 추가	평점(점)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경상북도	평점
마.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대구광역시	평점
아.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서울시	평점
D. 사회적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1.5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8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1.5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5
○ 마을기업(행정자치부 지정)	1.5
인천광역시	평점
다.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전라남도	평점
다.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	0.5
전라북도	평점
C. 사회적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1.0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8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1.0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0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1.0
충청남도	평점
J.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2.0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1)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충청북도	평점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 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3”) 및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7월 24일 시행)
-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2018.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5“의“다“)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12월 4일 시행)
- 다만, 상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됨
 -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는 타 영세업체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등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적용**

- 2020년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요건 충족시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 특히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2020. 5. 1., 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 2020. 7. 14., 제정]으로 물품 및 용역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1억원(2인 이상 견적)까지 상향하여 적용 가능함

5.4 단체표준제도

5.4.1 단체표준의 정의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KS서비스(S) 법령 및 표준정비를 통해 2008년부터 서비스인증제도 운영 (산업표준화법 제1조, 제6조)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임
 -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 (2)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 (3)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 용어 · 성능 · 절차 · 방법 ·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KS보유 서비스 표준은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이사서비스, 사업장심사, 골프장, 차량수리 및 견인, 산후조리원 등 9개 품명에 대해 48개 사업장에서 인증 획득(2020.10기준)
 - 한국산업표준(20,734종_’19.12기준)중 132종(6.1%)의 서비스 KS가 제정되어 양적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이나, 소비자 서비스가 대부분임

5.4.2 단체표준 목적 및 요건

-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단체표준의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 152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 ### 5.4.3 단체표준 및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절차
- | 담당기관 | 역할 |
|---------|---------------------------|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
| 한국표준협회 | 단체표준 등록 |
| 중소기업중앙회 | 단체표준 확정 |
| | 기관분쟁 등 조정 (분쟁협의위원회) |
| | 단체표준안 심의(단체표준심의회) |
| | 단체표준안 예고(30일) |
| | 서류검토 |
| 해당단체 | 단체표준안 등록접수 |
| | 단체표준안 제 · 개정 |
| | 단체표준안 심사(단체표준 심사위원회) |
| | 단체표준안 제 · 개정 요청(단체/이해관계인) |
| | 단체표준안 개발(단체/이해관계인) |
-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153

5.4.4 KS 및 단체표준 서비스 인증 혜택 및 지원

- 국가기관 및 자치 단체 / 공공단체의 서비스 조달 입찰 시 우선적으로 구매 혜택 부여
 - －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공공 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 하는 제도
 -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 －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0억원) 미만 물품 · 용역(中企간 경쟁 제품 제외) 구매 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동조합 추천 받은 업체 간 지명 경쟁입찰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동애로기술개발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 제공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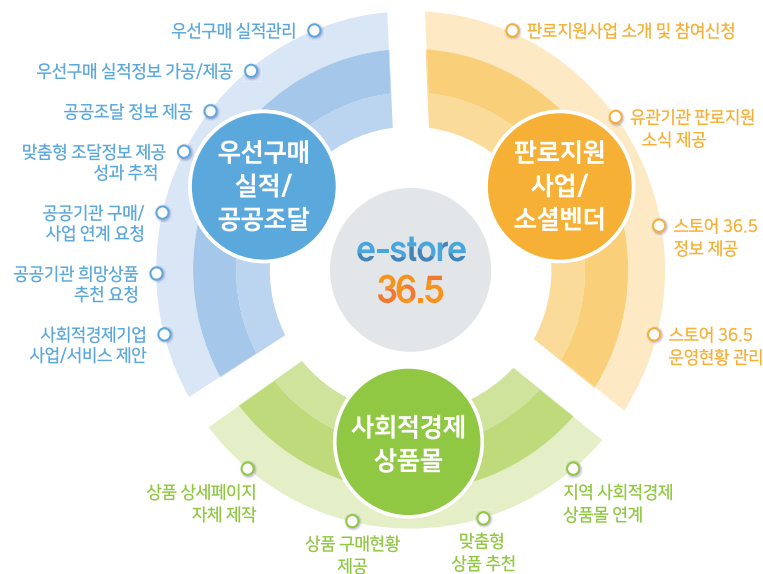
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소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 상품물, 판로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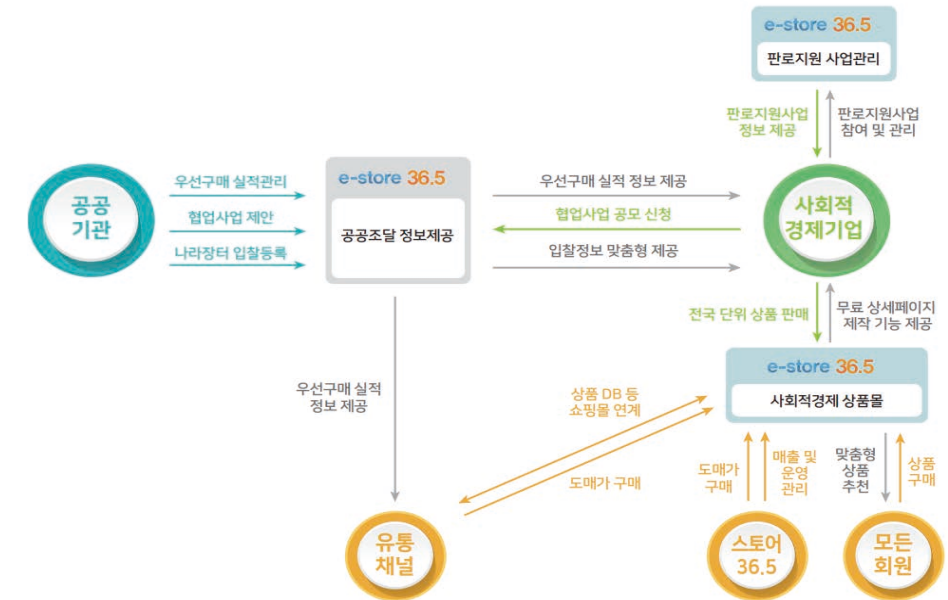
■ 운영 현황



■ e-store 36.5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구조도



■ e-store 36.5 입점 안내

● 입점 현황('20년 10월 기준)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1,418개사, 21,563개 상품 입점
- * 공공기관 회원 등 5,416명 회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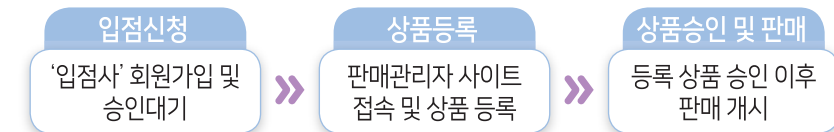
● 입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입점상품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서비스)

- * 단순 유통제품 입점 불가

● 입점신청 및 상품등록 절차



● 판매관리자 사이트 : <https://www.sepp.or.kr/seller>

● 입점 기업·상품 정보 현행화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요청에 의해, 연 1회 정보 현행화 실시
- * 정보 미현행화 시, 상품 노출/판매 중단

Buy Social

바이소셜 (Buy Social) 캠페인

바이소셜은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당신이 구매한 가치는 얼마인가요?

당신이 구매한 사회적경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비가 모두를 위한 가치로, 바이소셜(Buy Social)하세요

BUY SOCIAL

SOCIAL VALUE

Buy for People “사람을 위합니다”

∞

Buy for Life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

Buy for Local “지역 상생을 추구합니다”

∞

Buy for Earth “환경을 생각합니다”

∞

TOTAL :

∞ (무한대)

바이소셜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앞장섭니다



BLOG blog.naver.com/se365company | STORE www.sepp.or.kr
 INSTAGRAM [@kosea_365](https://www.instagram.com/kosea_365) | FACEBOOK www.facebook.com/social365 | YOUTUB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WITTER www.twitter.com/social_365 | KAKAO PLUS pf.kakao.com/_xkbrDx1

www.buysocial.or.kr



사회적경제기업은
바이소셜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미션을 홍보하고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세요!

[우선구매]가 만드는 변화!

-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재정을 배분 받게 되며,
- 공급기회, 대가보장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됩니다.
- 기업의 고유한 가치와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바이소셜 (Buy Social)이란?

나의 일상, 우리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소셜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칠 변화를 생각하는 것,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이소셜할 수 있습니다.

바이소셜 히스토리

바이소셜 캠페인은 2012년, SEUK(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시민, 기업과 공공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등
 전 세계가 바이소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도 '바이소셜 선언식'을 시작으로
 실천 도약에 함께 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비누를
바이소셜하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맛있는 빵을
바이소셜하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술가의 멋진 그림을
바이소셜하면
발달장애인 디자이너의
활동을 응원할 수 있어요



장바구니, 텀블러, 손수건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바이소셜해요



동네 상권에서
우리 먹거리를 바이소셜하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자를
도울 수 있어요



즐거운 공정여행으로
바이소셜하면
여행지, 지역주민, 환경 그리고
나까지 행복한 여행이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으로 바이소셜하면
지구 반대편 어린이가
글자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시간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
모두 바이소셜입니다



바이소셜 www.buysocial.or.kr

3.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닛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쿠팡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쿠팡박스>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22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 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트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

www.socialenterprise.or.kr